

제418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쳐

일 시 2024년 11월 27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6)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5)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8)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9)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9)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2)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7)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8)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3)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8)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9)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4)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7)
-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9)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0)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4)
-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9)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1)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3)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2)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8)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3)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7)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1)

- 
2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9)  
 3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3)  
 3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4)  
 3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5)  
 33.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4)
- 

### **상정된 안건**

- |   |   |
|---|---|
|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6) .....     | 3 |
|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5) ..... | 3 |
|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8) .....     | 3 |
|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9) .....     | 3 |
|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     | 3 |
|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6) .....     | 3 |
|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9) .....     | 3 |
| 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2) .....     | 3 |
| 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7) .....     | 3 |
|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8) .....    | 3 |
| 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3) .....     | 3 |
| 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8) .....    | 3 |
| 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9) .....    | 3 |
| 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4) .....    | 3 |
| 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7) .....    | 3 |
| 16.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9) .....          | 3 |
|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0) .....    | 3 |
|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4) .....    | 4 |
| 19.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        | 4 |
| 20.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       | 4 |
| 2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9) .....    | 4 |
| 2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1) .....    | 4 |
| 2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3) .....    | 4 |
| 2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2) .....    | 4 |
| 2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8) .....    | 4 |
| 2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3) .....    | 4 |
| 2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7) .....    | 4 |
| 2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1) .....    | 4 |
| 2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9) .....    | 4 |
| 3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3) .....    | 4 |
| 3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4) .....    | 4 |
| 3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5) .....    | 4 |

---

33.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4) ..... 4

---

(10시01분 개의)

○소위원장 정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와 재정 분야의 안건들을 소관하고 있어서 그 역할이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저를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박수영·박대출·박성훈·이종욱 위원님, 비교섭단체 차규근 위원님 그리고 민주당의 김영진·김영환·정일영·진성준·황명선 위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지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진행은 상정한 법률안에 대해서 안건별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이후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합의가 된 건들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또 배석자는 위원장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6)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5)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8)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9)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6)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9)
  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2)
  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7)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8)
  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3)
  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8)
  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9)
  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4)
  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7)
  16.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9)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0)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4)
19.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20.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2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9)
2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1)
2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3)
2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2)
2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8)
2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3)
2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7)
2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1)
2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9)
3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3)
3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4)
3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5)
33.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4)

(10시03분)

○**소위원장 정태호** 의사일정 제1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주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1권 봐 주시기 바랍니다.

1권의 1페이지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의원안입니다.

이 법안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쪽부터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별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국가재정법 4조는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설치 근 거 법률의 제명을 종전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작년 6월에 이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 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법명 정비 일환인 측면이 있어 개 정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사항이라서 4쪽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은 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연장입니다.

현재는 동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4년 12월 31일까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29년 12월 31일까지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는데 그 개정안에서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경우 특별회계의 설치에 대해서 기간을 두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상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재 동 개정법률안은 지난 8월 21일에 산업위에서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토의견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동 개정안은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의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5쪽에서 개정법률안을 간단히 정리하였고요.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용도에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 특별회계는 연구개발, 기반 구축, 자금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민간 재원에 해당하는 정부보증채권을 통하여 응자, 펀드 등을 주로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식 위주인 공급망안정화기금과는 중복되지 않고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도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김범석 기획재정부1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송주아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것처럼 23년 6월에 기개정된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적 성격의 개정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질의 또는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조문 정리라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김영환 위원** 혹시 공급망안정화기금, 주로 응자·펀드 이렇게 간접적인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회계하고 겹치는 건 없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여기 산업부에서도 의견 제기한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급망기금은 주로 응자, 간접적 지원 위주고요. 이쪽은 직접 지원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산업부하고 협의한 부분입니다.

○**차규근 위원** 금방 김영환 위원님 질의도 하셨고 답변도 있으셨고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복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부대의견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중복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하는 정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수용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차관님, 이게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26년부터는 소부장 특별회계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연계가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정부 내부적으로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반도체 특별회계에 설치하지 않고 이 회계로 활용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했었는데요. 아마 산자위 논의 과정에서 반도체 특별회계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이 법에서는 별도 반도체 내용은 담지 않고 가기로 했습니다.

○박성훈 위원 2개는 별개의 트랙으로 가는 것으로 정부는 정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실제로 소재·부품·장비 관련한 특별회계에서 현장에서 진행되는 상황들 취합된 것 있어요, 관련한 내용들? 법은 이런데 실제로 소부장 관련한 사항들 관련해서 지원되거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정리된 것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런 부분은 필요하시면 산업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매일 법만 이렇게 해 놓고…… 현장에서 실제로 이 관련한 사안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김영진 위원 관련해서 산업부에 자료제출을 요청해서 꼭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부대의견 하나 더, 특별회계 취지에 맞도록 소부장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 일반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과 차별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독립적인 재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대의견으로 남기고자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차규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는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 소부장 특별회계라는 회계 성격상 이게 독립적인 재원을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성격의 기금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다른 회계와의, 특별회계만의 차별성을 가지라는 취지는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 재원까지 별도로 확보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회계의 성격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부대의견 문안을 만들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이게 재원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인데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0 이렇게 재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예수금, 주요 재원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관세 관련해서 계속 했었습니까? 세수결손 대응에 따라서 혹시 전출시키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내용들을 좀 아세요, 1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혹시 실무자……

○김영환 위원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나성화 국장, 혹시 내용 아세요, 세입 관련해 가지고?

○김영환 위원 특별회계 세입 관련해서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산업부에서 나오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공급망정책관 나성화 안녕하세요. 산업부 공급망국장 나성화입니다.

소부장 특별회계 세입 재원 다양화 필요성 말씀들 주고 계신데요. 일단 일반회계 전입금에 90% 정도를 저희가 의존하고 있긴 한데 사실 지금 소부장 R&D 과제가 한 70% 이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종료되면서 계속해서 기술료가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기술료 수입이 일부 보완이 되면서 세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채워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 징수액의 10%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적으로 더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환 위원 실무적으로 자료를, 왜냐하면 기재부가 안 준 것들이 하도 많아 가지고 그것 체크 좀 하려고 그리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공급망정책관 나성화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게 명칭 변경하고 기한 연장인데 그것은 다른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함께 해 줘야 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잠정 의결이지요?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이것은 한 건 아닌가? 한 건이라서 바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행정실장 이상홍 먼저 하셔도 될 것 같고 혹시 필요하시면……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원안 의결? 잠정 의결?

○행정실장 이상홍 원안으로 의결하시면 되고 부대의견을 다실지 마실지만 확인해서……

○차규근 위원 아까 얘기드린 것……

○소위원장 정태호 차관님이 설명하셨는데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차규근 위원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저희가 문안 만들어서 한번 상의드리고……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지금 부대의견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심사보고서에 실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법안 말고 법안 심사보고서를 저희가 제출할 때 이런 부대의견이 있었다 이걸 넣으면 어떨까, 그러면 기록으로 남으니까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게 하실 거예요?

○차규근 위원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그것은 심사보고서에 부대의견을 넣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서에 부대의견을 넣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자료 11쪽입니다.

송재봉 의원안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12쪽 보시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대해서 국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장기사용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유재산특례법 4조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 신설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별표의 개정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국유재산특례 신설 요건으로 특례 목적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예산 지원 등 다른 수단에 비해서 효과적인지 여부, 특례 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그리고 존속기간이 적절한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살펴보면 대규모 시설이 요구되는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 개정안은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 국유재산 임대료로 지출되는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 가능하므로 국유재산특례가 다른 방법에 비해서 효과적인 지원 수단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유재산특례 대상을 대형가속기 운영 기관 등으로 한정하면서 이를 대형가속기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대형가속기 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확성과 구체성 요건도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존속기한은 2032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존속기한 설정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과방위 논의 과정에서 제명이 변경되었고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8조에 근거하므로 이를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동 법안의 의결의 전제가 되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과방위에서 11월, 며칠 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6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개정안이 있고 수정의견으로 방금 말씀드린 수정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특례 제도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공익성, 보충성, 구체성, 세 가지 원칙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특례의 공익성이 인정되고요. 가속기 운영 기간이 장기간, 50년 이상이기 때문에 사용료 감면 및 장기사용허가 특례가 예산 등 다른 수단보다 더 적절하다는 점에서 정부도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이 과거에는 대형가속기를 구축·운영·활용하는 각 목의 단체를 의미한다고 돼 있었는데 지난 21대 국회 소위에서 너무 범위가 넓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활용 부분을 제외하고 그 부분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송주아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8조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박대출 위원** 지금 차관 설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그 당시 21대 국회 때 지적한 사항이 돼 가지고요, 그 지적이라는 게 제가 한 건데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재정소위에서 제가 이 법안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이게 이름 그대로 특례법인데 특례라는 것에 맞게 구체적으로 범위가 좀…… 특례가 적용되는 요건이 조금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다. 범위가 넓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포괄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넓다’하고 ‘포괄적’은 의미가 다르지요. 그 포괄적인 것을 문구를 좀 수정해 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정한 문구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수석전문위원님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특례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근거법, 개별법에서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저희들 기재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칙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에 각각 발의돼서 법사위에서 만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건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개별법의 상태에 따라서 기재위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걸 원칙을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일단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지금 다른 상임위의 법이 의결의 전제가 된 법이 있습니다, 이 법처럼. 그럴 경우는 저희가 심사할 때 일단 다른 상임위 심사 경과를 살펴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심사를 일단 지켜보고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고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다른 상임위원회의 심사 경과를 먼저 살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이건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심사를 할 때 국가재정법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이 법사위에 회부되면 같이 심사를 할 것입니다.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전원 합의로 하고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18항까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정건전화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우선 3항부터 10항까지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부터 10항까지는 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련된 것입니다. 8건의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금액을 상향하거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거나 심사 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18쪽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 변경에 대해서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 포함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 사업은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SOC나 R&D 사업에 대해서만 기준금액을 상향하거나 건설공사 사업에 대해서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또는 건설·지능정보화·R&D 사업에 대해서 기준금액을 상향하거나 아니면 모든 대상 사업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수진 의원안의 경우는 R&D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쪽에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후에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사업 금액기준은 변경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화된 국가경제 및 재정 규모 추세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에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역량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품질을 제고하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들이 예타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면 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취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최수진 의원안의 경우 예타 대상에서 R&D 사업을 제외하고 있는데 빠르게 변하는 기술환경과 또 미래선도기술을 경쟁하는 국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만 R&D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R&D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및 적정 소요 예산을 사전에 검토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정부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정부 입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행일 및 적용례는 개정안별로 상이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정부는 기준금액 상향 부분 관련해서 기본적인 취지에는 다 공감하고 R&D 예타 폐지 부분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최수진 의원안과 정부가 생각하는 부분은 R&D 부분에서 건축이랄지 그런 부분을 제외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이 예타를 거치지 않아 예산 낭비 초래 우려나 건전성 우려가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논의하실 재정준칙과 연계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정부의 희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질문, 토론해 주십시오.

○**박수영 위원** 차관님, 정부가 하고 있는 입법 절차, 그 법안의 내용은 지금 우리 의원들이 내놓으신 법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동일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최수진 의원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박수영 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정부가 국가재정법하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부안으로. 그 정부안은 우리 의원님들이 내신 안하고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저희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재정관리국장 박봉용입니다.

최수진 의원안은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제3호의 R&D 사업만을 제외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게 됐을 경우에는 제4호의 기타 사회복지·보건·교육 분야 이런 것들의 R&D 사업들은 포함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도 R&D 사업이 포함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 R&D 대상 사업 규정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법안은 최수진 의원안의 R&D 관련된 것만 있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나머지는 의원들 입법하고 상관이 없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타 기준금액 변경 필요성 존재’에서, 그러면 어떻게 동의한다는 거예요? 기준금액이나 두루두루 해서 변경안이 있는 건가요, 정부가? 이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 의견이 수정 수용을 했으면 수정 수용의 범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액 기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기본적으로 금액 기준을 1000억으로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김영진 위원** 1000억으로 상향에 동의?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R&D는 좀 전에 말씀드린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는 한데, R&D 예산 폐지 부분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조금 보완을 해 가지고, 의결을 하신다라고 하면 수정의견을 드려서 수정 의결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대출 위원** 지금 예타 제도가 도입된 지 25년 동안 GDP 3.8배, 재정 규모 4.4배, 물가 기준으로 1.8배, 그러니까 이 기준금액은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예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타 제도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건 해당 사업이 자연되는 문제…… 예타를 하는 기준을 가지고 국가재정을 엄격히 쓰자는 그 원칙에는 누구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내용인데, 그렇더라도 이게 되면 사업이 자연되는 문제점이 늘 있거든요. 예타 시기도 좀 더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이를테면 경부고속도로를 예타 했으면 100% 예타 기준에 안 맞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아마 수요랄지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예타의 기준을, 이 점수 제도를…… 여러 가지 해당 사항들을 가지고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부여할 때 앞으로의 미래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점수를 좀 높인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당장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걸 예타로 따지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경부고속도로는 건설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차관님, 예타에 관해서는 정말 의원님들도 불만 또 각 부처도 엄청 망예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정일영 위원** 예를 들어서 산업부든 국토부든 이 절차가 복잡하고 참 희한한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국토부로 예를 듭시다. 그러면 각 부처, 자치단체 이런 데서 철도든 도로든 그걸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토부에서 다시 걸러 가지고 기재부로 넘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그걸 또 심사해 가지고 그걸 수행기관에, KDI하고 조세 무는 연구원이던가요? 두 군데가 지금 지정돼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거기로 넘기고 그러면 거기서 또 1년 이렇게 거쳐서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주무부처 의견이 존중되든지 그 절차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지자체나 어떤 사업 수행하는, 신청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다른 중앙부처, 국토부든 산업부든 여기서 붙잡고 한참 있고 거기서 걸러져서 결정된 줄 알았더니 또 기재부 가서 한참 있고 기재부에서 통과되면 된 줄 알았더니 또 KDI니 어디 가서 한참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되게 헛갈리는 거예요, 시간만 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재부의 권한을 좀 줄이십시오, 주무부처 의견을 존중하고. 기재부는 모아서…… 예타는 해야 되겠지요, 정부 예산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이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좀 폐단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예타 1년에 몇 건 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정일영 위원 차관은 몰라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지금 대략 한 20건 이내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는데 뭔 담당 국장한테……

한 20건 하잖아요, 23건 정도.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20건 이내입니다.

○정일영 위원 기간은 얼마 걸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기간은 전문위원 자료에도 있지만 16개월에서 심할 때는 한 20개월까지……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사업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무부처 신청해야지, 그 전에 사전타당성조사 이미 했지, 뭐 하지, 뭐 하지…… 이게 세월만 가는 거예요, 국민들은 답답해 죽겠는데. 신청하면 그것 한 6개월 안팎에는 끝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KDI니 뭐 하는데 필요하면 기관을 늘리고 민간 기관들도 좀 집어넣어서, 현대 경제연구원이라든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문성 있는 기관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좀 늘리고.

한 군데 독과점 하듯이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타 수행하는 기관 근무하는 사람들이 무슨 커다란 권한이나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 몰라요? 아시지요? 엄청 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큰 사업들이 왔다 갔다 해 버리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박사학위 받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분들이 사실 현장의 어떤 실질적인 필요성 이런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것도 좀 보완하도록 하고. 왜냐하면 교과에서 공부한 것, 미국에서 영국에서 공부한 기준 가지고 그냥 동일한 잣대 가지고 모든 사업에 다 들이대는데 사업마다 특성이 있거든, 지역마다 다르고. 그 수행 기관을 늘려서 수행 기간을, 소요 기간을 좀 줄이고.

그리고 세 번째, 예타 기준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B/C 아닙니까. 베니핏하고 코스트 인데, 코스트 문제도 있지만 우선 베니핏도…… 현재의 예타 기준으로 하면 쉽게 예를 들면 수요가 많은 곳에 B/C 1이 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정일영 위원 수요가 많은 곳이 어디예요? 그동안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강남이에요, 서울 강남. GTX 전부 강남에 통과하게 되듯이 계속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수조 원씩 투입되는 곳의 B/C는 1이 넘는다고. 소외된 곳은, 그런 게 없는 곳은, 낙후된

지역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낙후된 지역에 일부 가점 어찌고 하는 게 있기는 있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갑자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든지, 갑자기라는 게 몇 년에 걸쳐서 만드는 거지만, 인구가 5만 명 들어왔어. 10만 명 들어왔어. 그런데 거기에서 지하철 하나, 철도 하나 놓는 게 얼마나 힘든지, B/C가 안 나온다는 그 이름 아래에.

그러니까 B/C의 점수도 개선을 하십시오. 현행 제도로 하면 이미 발전된 곳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거기 예타가 계속 높게 나온다니까요. 그렇지 않은 소외된 지역, 낙후된 지역, 이제 막 개발이 되는 지역,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소도 감안이 돼야 되겠고 수요 계산할 때 천편일률적으로 그쪽에 점수를 너무 많이 부여하지 않아서…… 소외된,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산업시설이든 교통시설이든 이런 게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백날 해도 안 고쳐져서 답답하기는 한데 좀 고쳐 보세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2차관 소속이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 내부적으로 상의해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기준 상향하고 있는 취지도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고려해서 집중해서 조금 더 빨리 현장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는 것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기준 상향도 전에도 논의되고 했는데 전반적인 예타 관련 내용들이 항상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에도 재정소위도 해 보고 하면 많이 개선하도록 요구는 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금액 올리는 것 이런 것은 제가 따로 한 번 더 말씀……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훈 위원** 차관님,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화된 국가 경제 규모라든지 재정 규모의 추세를 반영해서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하는 것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제도의 현실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원이 지난 6월에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예타 면제 사업이 예타 실시 사업 건수를 넘어서고 있다, 예타 면제가 급증하면서 운영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요구가 상충하는 거지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해 4월에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지원 규모 5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의결됐는데 그 이후에 이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나 어떤 논리로 통과가 되지 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 부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야 위원님들 간에도 이 부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출 예산 낭비 사례라든지 건전성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같이 고려해서 재정준칙하고 같이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끊임없이 연구를 하시고 발표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두 가지 요구에 대해서 저는 재정준칙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개선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저는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내용들 또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 또 지역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다 담길 수가 없거든요. 각각 상충되는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안처럼 또 지금 정성호·박덕흠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처럼 이런 내용으로 대상 금액을, 예타 대상의 기준금액을 상향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재정준칙과 같이 처리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정일영 위원님 말씀대로 예타 관련한 제도가 사실은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고 낭비되지 않고 계획적으로 한다라는 취지에서 한 20년 전에 제정됐는데 실제로 보면 중간에 한 3년 전에도 예타 제도의 부분적인 변경이 있었잖아요. 한마디로 경제성만을 우선으로 하는 것 속에서 너무 편파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거기에 정책성이라든지 여러 여타 부분들을 넣어서 부분적으로 수정을 했는데 결론은 예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경제성이 가장 우선되다 보니까 강남은 다 되는데 강남이 아닌 지역은 안 되는 그리고 수도권은 되는데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안 되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도의 선한 측면이 있는데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기존의 기반시설이나 여타 부분들이 잘되어 있는 곳으로 중복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가 일면에서는 악용됐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예타를 했었던 기본적인 취지와 방향에 맞게끔 더 투자가 필요한 곳에 어떻게 재정을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수정을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년 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 위원들이 해서 토론회도 했고 기재부에서도 부분적인 변경은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2차관 소속이라고 하시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지금 말씀하신 부분……

○**김영진 위원** 그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일점일획도 변경되지 않으니까. 지금 제안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지방에 있는 분들이세요, 이원택 의원이나. 두루두루 전체적으로 필요한데 예타 B/C가 안 나오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제안이고 그 제안에 타당성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지만 이제는 기재부에서 좀 판단을, 예전에 우리가 3년 전에 바꿨던 방식으로 조금 더 클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견 한번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지금……

○**김영진 위원** GTX가 왜 다 강남으로 가요? 우리나라가 강남 공화국이에요, 지금?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서 지금 기재부에서 연구용역 중인데 자세한 연구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담당 국장이 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예,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재정관리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9년도에 수도권의 균형발전 항목 자체를 폐지하고요.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항목을 비수도권에 옮렸습니다. 옮겨서 제도 시행 3년이 됐는데요. 지금 3년간 결과를

리뷰를 좀 하고서요 그걸 토대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5년째 하는 거예요, 19년에 개선됐으니까. 또 그사이에 수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그러니까 19년도에 제도개선 한 결과를 3년 치 실적을 가지고서 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 보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지금 현재 신청된 그런 사업들을 정부가 분석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 1000억으로 예타 면제 기준을 상향했을 때 재정 부담이 몇 건 정도에 얼마가 더 추가되는지 조사한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지금 1000억으로 했을 경우에, 전체 기준으로 보면 현재 500억 이상이 대략 한 490건 정도로 보이는데 만약에 1000억으로 높인다고 하면 한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20%?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박대출 위원** 그러면 얼마야. 400건.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최근 10년 동안 490건인데……

○**박대출 위원** 490인데 400건이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392건까지……

○**박대출 위원** 액수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액수는 저희가 파악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대출 위원** 액수가 파악이 안 돼요? 왜? 건수가 있는데 사업의 건수가 다, 사업 신청 규모가 있는데 왜 파악이 안 돼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대상 사업이니까 이게 만약에 저희가……

○**박대출 위원** 그건 최종 확정이고 신청 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충 예상을 해 봐야지. 왜냐하면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요, 지금 예타 면제를 가지고 역대 보면 지난해는 12조 원이 대상이 됐는데 2005년에는 0.7조 원이었거든요. 2009년에는 26조 원, 2014년 14.5조 원, 2019년에 36조 원, 2020년 30조 원, 2021년부터 그다음에 줄기 시작했고 10.5조, 17.2조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재정 규모가 건수로 20% 정도 기준으로 한다면 저는 건수 기준으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봐지는데요. 액수 면에서 어떻게 차이가 많이 생길지 그것을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소위원장 정태호** 또 하실 분.

○**이종욱 위원** 정부 입장대로 저도 현실적으로 예타 제도를 500억에서 1000억으로 올릴 필요성은 인정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제 방향은 예타 제도는 조금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면제도 많아지고 있고요.

사실은 500억을 1000억으로 올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SOC 사업보다는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이런 사업들, 자잘한 사업들까지 검토하기 힘든, B/C 분석도 잘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추진하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실제적으로는 지금 R&D를 제외한다고 하니까 R&D 빼면 1년에 한 20~30건 정도 하더라고요.

2019년도에는 한 50~70건 했는데 최근 것 보면 한 20~30건 정도기 때문에 물량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R&D를 뺀다고 돼 있는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R&D도 다 해야 된다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R&D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건 국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정부가 지금 법제처 심사 중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입법예고도 다 끝났잖아요. 문구는 다 확정이 돼 있는 건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열추 확정돼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걸 지금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면 문구를 당연히 가져오셔서 같이 보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문구 주시고 같이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차규근 위원 저 한 말씀……

○소위원장 정태호 예.

○차규근 위원 저도 이종욱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기재부에서 R&D 예타 관련해서 법안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조금 이따가 살펴볼 안건 번호 11항에서 13항 공공의료기관 예타 면제 법안도 발의가 돼 가지고 복지위에서 아직 통과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 진행 상황도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내년 소위에서 같이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기재부에 하는데요. 최근 5년간 총사업비 구간별 예타 신청·선정·통과 현황, 최근 5년간 예타 분야별 신청·선정·통과 현황, 최근 5년간 예타 면제 현황과 면제 사유를 분리해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차 위원님 말씀은 결론을 내리지 말자라는 얘기인가요?

○차규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관련되는 법안이 입법예고 돼 있고 또 11항에서 13항 공공의료기관 예타 면제 관련해서는 아직 관련 법안 통과도 안 됐기 때문에……

○소위원장 정태호 아니, 이 기준에 관한 문제에서.

○차규근 위원 기준이요? 함께 같이……

지금 당장 오늘 내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그런 법안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내년 초에……

○소위원장 정태호 그래도 잠정 결론은 내리고 가야 되는데요.

○차규근 위원 잠정 결론을 내려요?

○소위원장 정태호 예.

정일영 위원님부터요.

○정일영 위원 차관님, 법안이 지금 법제처 심사 중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정일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얼마로 돼 있어요? 변동이 있나요? 총사업비 그건 변동이 없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R&D는 아까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폐지인데 최소 지원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R&D 중에도 건물 짓고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니고 기존 R&D 체제랑 맞춰 그 부분 좀 제외하는 부분들 포함해서 몇 가지 기술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금액, 지금 500억 이상 이것은 변동이 없는 거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금액과 관계없이, 금액은 정부안은 변동이 없고요. R&D 폐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일영 위원 지금 R&D는 과기부가 하고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정일영 위원 그러면 과기부하고 다 합의가 된 상태에서 법제처 심사 중인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정일영 위원 지금 의원님들 발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법안에, 물론 투 트랙으로 갈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법안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거에 집중하면, 박수영 의원님 안을 비롯해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1000억으로 올리고 신규 500억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자료의 참고 4에 나와 있는 예타 면제 추이, 건수·규모는…… 지금 이게 법에 의한 면제 사업들입니까, 면제라는 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법에 의해서 면제받고 있는 것들, 대형 SOC, 국책사업들 그런 겁니까?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예.

○정일영 위원 이게 2023년도에……

○진성준 위원 정책적 결정도 있지 않나요?

○이종욱 위원 학교 이런 것.

○정일영 위원 학교 이런 것들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인데 이걸 1000억으로 올린다고 그래 가지고 500억에서 1000억 사이에 있는 것들이 빠진다고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면제받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리고 공공기관 예타는 지금 2000억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2000억이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2000억 이상이 돼서 예타받는 공공기관 건수가 1년에 몇 개나 돼요?  
몰라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다른 국 소관이라서……

○정일영 위원 아니, 그것도 예타인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공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재정관리국장이고요.

○정일영 위원 어쨌든 기재부 아닙니까, 그리고 예타고? 차관님 와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예타를 하는데 그쪽은 전혀 몰라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쪽은 공타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공타든 같은 것 아니에요, 결국은. 공타든, 예타든.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1000억으로 올라가면 그쪽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거 파악이 안 되셨군요.

○박대출 위원 큰 방향에서 결론을 정해 놓고 또 필요한 부분은 다시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아니요, 말씀은 다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정일영 위원 제가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를 지을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그건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1000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 그리고 이걸 보류시키지 말고 일단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안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사업 규모는, 총사업비는 1000억?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국고 지원은 500억.

○소위원장 정태호 그다음에 보조는 500억.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다음에 아까 R&D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라고 얘기하셨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지금 최수진 의원안 취지에는 공감은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에서 저희가 조금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그걸 포함해 가지고……

대안은 수석전문위원님이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만들어 오실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저희가 만들어서 수석전문위원님께 상의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정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런 방향에서 잠정 의결해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서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그러면 지금 금액 상향은 SOC와 R&D 사업에 대해서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R&D는 아예 폐지하고 저희가 의견을 따로 드리고요. 전부 다에 대해서 1000억, 500억.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전부 다에 대해서 1000억, 500억.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죄송합니다. SOC만 1000억, 500억.

○소위원장 정태호 일단 그렇게 대안을 만들어 오시고요. 그렇게 잠정 의결하고.

그다음에 나 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안 첨부서류로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 및 사유 구체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나 번은 별개의 사안이라서요. 지금 보고드릴까요?

그러면 지금 가 번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변경에 대해서, SOC에 대해서 1000억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하고 R&D는 삭제하고 문구는 기재부와 좀 더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예타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삭제시킨다고요?

○**소위원장 정태호** R&D.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요.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의견이에요?

○**김영환 위원** 저는 반대인데.

○**소위원장 정태호** 의견을 얘기하세요.

아까 동의를 하셔 가지고……

○**김영환 위원** 아니아니요. 아까 위원님 중에서 한 분도 R&D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거잖아요.

지금 R&D 관련해서 삭제한다는 의견을 대안으로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위원회 대안으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저는 의견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금액 상향만 동의하고. 그래서 R&D 관련해서는 정부가 급작스럽게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

그다음에 총액만 올라가면 R&D도 총액에 대해서는 다 혜택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대안을 가져오면.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김영환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신중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조금만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정부 원래 취지도 저쪽의 다른 법안이 논의가 좀 정리되면 반영했으면 하는 게 정부의 취지였기 때문에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R&D 부분은 단순히 금액만 있는 게 아니라, SOC도 다 중요하지만 시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대규모 R&D라 하더라도 시기를 좀 단축하는 취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 사회적 상황이나 면제 사유들이 있어요. 국무회의 통과하면 또 면제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김영환 위원** 국가가 급박하게, 예를 들면 코로나 때 백신 개발이나 이런 R&D가 갑자기 필요하다 그러면 그 면제 사유에 충분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총체적으로, 예를 들면 R&D를 이렇게 같이 그냥 일괄적으로 삭제해 버리면, 기재부가 늘 재정준칙 얘기하시고 전전재정 얘기하시는…… R&D 사업 안에도 정말 거품들이 좀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걸려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저는 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위원님 취지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하여튼 이런 취지를 담아서……

○진성준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라면 기준금액 상향은 차제에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R&D 문제는 정부에서 이런저런 조건들을 붙여야 된다고 하니까 그 안이 나오면 자료와 함께 검토해서 2단계로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그 대안을 만들어 오셔서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포함시켜서 일거에 위원회 대안을 만들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R&D 부분은 제외해서 다음에 하고……

○박대출 위원 1차 결론은 내자는 얘기예요.

○진성준 위원 1차 결론은 기준금액만 상향해서 이번에 처리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정일영 위원 저도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거는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여러 의원님들의 법안이 있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대안에 상향하는 안이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의결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진성준 위원 이 기준금액 상향 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안을 제출한다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아니,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서,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소위원장 정태호 문구를 만들어 와야 된다니까요.

○진성준 위원 그러면 언제 다시 또 이 회의를 합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오후에 하면 되지요.

○진성준 위원 오후에 제출 가능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별로 어려운 일 아닙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오늘 1·2·3권까지 다 끝내야 돼.

36페이지 나 번, 빨리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하나만 확인하면요, 그러면 문구를 조정할 때 R&D 삭제하는 것은 추후에 논의하는 거고 SOC, R&D 합쳐서 기준금액 일단 상향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예.

○진성준 위원 거의 모든 사업의 기준금액을 그렇게 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SOC니 뭐니를 떠나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러니까 SOC만이었는데 말씀하신 취지가 있으니까 우선 R&D까지 포함해서, 김영환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SOC, R&D를 1000억으로 높이는 안으로 문구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하여튼 그 취지를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그걸 가져와서 얘기를 하자니까요.

나 번.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36쪽의 나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예산안 첨부서류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안 첨부서류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은 사유로서 총사업비, 사업 기간, 해당 연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국회의 예산 심사가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 조문 중에서 ‘해당 연도 세출예산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연도가 무엇인지 좀 혼란스러울 여지가 있으므로 조문을 수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때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정부 의견은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이거는 수정안이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아니, 그냥 원안으로 하시고 대통령령에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의 없습니까?

○**진성준 위원** 아니요.

해당 연도라고 하는 해석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됩니다. 예산안 첨부서류로 무엇을 담아야 될지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야 되는데요.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서 해당 연도가 무엇인지 좀 구체화할 수 있는, 지침도 가능하고 또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박대출 위원** 어차피 담아야 될 내용에 그걸 추가한다는 얘기예요.

○**진성준 위원** 담아야 될 내용인데 정부는 해당 연도를 어떻게 해석해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해당 연도를 삭제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제가 말씀드리면요, 37쪽에 보시면 참고 조문이 있습니다. 국가 재정법에 예산안 첨부서류 해서 1호부터 죽 있는데 여기에 종종 해당 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하는 연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2024년도에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해당 연도는 2024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적용되는 건요.

그런데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해서는 2025년도 예산안이 얼마인지를 필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연도가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조문별로. 어떤 것은 2024년이 되고 어떤 것은 2025년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위 법령이나 지침에서 무엇인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진성준 위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다만 이게 해당 연도만이 아니라 사업들이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계속되는 사업이 있으니 연차별 세출예산금액을 정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 법안을 따로, 해당 연도라는 말이 복잡한 측면이 있다면 연차별 또는 연도별 세출예산금액 이렇게 정해서 대통령령으로 하고 이 수정안을 만들어서 위원회안으로 법안은 정리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진성준 위원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렇게 되면 총사업비가……

○**정일영 위원** 제가 지금 발언 중인데 좀……

○**박대출 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정일영 위원** 해당 연도를 법에서 명확히 하시는 것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해당 연도의 해석을 대통령령으로 넘기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오해의 소지도 있고 나중에 분란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걸 법에서 명쾌히 해 주시는데 그걸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에서는 아까 진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정리 좀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문안에 세출예산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필요하신 것은 저희가 제출한 연도의 예산일 것이고요.

저희가 총사업비를 붙였고 총사업비의 연간 소요는 또 예산 심의할 때 다 결론이 나기 때문에 진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나 정일영 위원님 말씀 취지에는 다 공감을 하는데 중기사업 계획이랄지 그런 부분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제출을 해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해당 연도나 당해 연도는 의미가 또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다르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정부 희망은 해당 연도를 빼면 어차피 제출하는 연도, 그 해에 예산 소요가 얼마 들어갔느냐가 필요하신 부분일 테니까 그 부분으로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예,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이해가 되셨나요?

○**박성훈 위원** 해당 연도라는 문구만 삭제를 해도 충분한 의미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논란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해당 연도를 빼자라는 거예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빼고, 그렇게 해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죽 잠정 의결해 가지고 나중에 국가재정법 관련해서는 통으로 다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나 번.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다음, 39쪽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 부여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원택 의원안은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이종배 의원안은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등에 따라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부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법률에 명시하여 명확하고 안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신규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미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에서 경제성·정책성 평가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평가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 부분만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저희 자료에 들어 있던 것처럼,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 지역균형 가중치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으셨는데 정부는 현재 있는 조항대로 운영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진성준 위원 저부터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라면 지금 지방소멸을 우려하고 또 도농 간의 격차, 서울과 지방 간,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커서 지방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법률에 규정해서 그런 우려를 우리 국회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실무 심사 과정에서 지역 가중치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더더욱 필요한 일 이겠으나 기왕에 가중치를 반영하고 있으니 그 가중치의 숫자를 법에다 명시하는 게 아니라면 이런 취지를 국가재정법에 반영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국회가 마땅히 고려할 만한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규정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정일영 위원 차관님, 가중치 부여 제도는 지금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이미 있는데 지금 비수도권으로 되어 있던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지금 비수도권만 부여하는…… 19년 5월에 발표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게 지역낙후도 평가를 해 가지고 반영하는 게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인데, 제가 오늘 예결위 참석하느라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지역낙후도하고 그 점수가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래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인데 거기가 인천의 제일 남쪽 외곽이지요, 바다 쪽인데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 도시고. 그런데 거기에 지하철 한 1.74km를 인천 지하철 1호선에서 연장하고, 인구가 5만 명이 신규로 입주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 예타 제도를 해 가지고도 안 되고 수도권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낙후된 지역인데도, 수도권의 제일 끝자락인데 어쨌든 수도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미 지하철 다 연결되어 있어서 마지막 2개 역만 신설하고, 인구가 5만 명이나 들어가 있는데 예타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 갑갑한데, 제가 그것을 보면. 이 예타 제도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5만 명 주민이 오늘같이 눈 오고 비 올 때 그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버스 타고 뛰고 자전거 타고 그 고생들을 하고 다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예타 제도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지역낙후도도, 이것을 하시려면 제대로 해야지…… 제가 이따 오후에 표를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역낙후도하고 B/C 나온 것하고 매칭도 안 되고 이게 제대로 안 돼요.

지역낙후도는 어디서 평가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각 수행기관에서 평가합니다.

○정일영 위원 수행기관에서?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예.

○정일영 위원 어떻든 이게 안 맞더라고요, 안 맞아. 그래서 제대로 좀 해야 되고.

저는 수도권 외라고 할 것 없이 전국 다, 수도권 다 포함하는데 지역낙후도 점수로 하면 서울 같은 지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남 같은 데는 낙후가 안 되어 있고 최고로 좋은 지역이니까 그런 데는 가점이 없을 거고 수도권이라도 경기도 저기 외곽에 있는 지역들은, 낙후된 지역 있잖아요. 그런 경기도 외곽 지역은 가중치가 들어가야 될 거고.

그래서 이런 가중치 점수를 부여하는 그 기준을 정교하게 만드셔 가지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역 낙후가 안 되어 있는 발전된 지역이다 하는 곳은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가중치가 필요 없는 거고,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인천이든 경기도든 외곽에 정말 낙후되고 새로운 투자가 필요한 곳에는 가중치 부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 의견은 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 말고 낙후도 평가라든지 가중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차제에 완전히 개선을 해 가지고 낙후된 지역은 좀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중치를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아까 김영환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네요.

○김영환 위원 기재부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는데 수도권이 다 수도권이 아니지요. 연천, 가평, 동두천, 포천 이런 접경지역들은 정말 재정자립도 한번 보면 어지간한 지방보다도 못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접경지역들인데 법상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산자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이 또 포함이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가중치나 이런 데에서는 또 소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상임위에서 정말 지역 얘기 안 하는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완전한 베드타운입니다. 이번에 또 대곡역에 주택 1만 호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아니, 주택만 그렇게 두드려 박고 매일 16만 명이 자유로 속에서 지금 버티면서 오고 있는데 교통개선대책 하나라도 하려면 이 예타를 못 넘어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제가 20년 전에 일산에서 국회까지 출근할 때 20분, 25분 걸렸어요, 집에서. 지금은 한 시간 반에도 못 와요. 어떤 때는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이 교통개선대책들 하나도 못하고 계속 주택정책만…… 무슨 고양시가, 일산이 자고 먹는 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특히 이런 예타 과정에서 되게 소외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주택정책 따로, 교통정책 따로. 또 주택정책을 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까지 함께하기로 해 놓고 주택만 먼저 냅다 지어 놓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괴주 운정 보세요. 고속도로 하나, 도로 하나,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십몇 년이 지나도 놓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자유로로 나와 가지고 다 뛰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정부 정책의 엇박자와 관련해서, 베드타운을 만들었으면 교통개선대책을 제대로 해 놓고 하든지 아니면 출퇴근 없이 살 수 있도록 자족용지를 제대로 부여하든지. 이런 부분들에 정말 형평성 문제가 있다, 접경지역이랄지 베드타운 지역이랄지 이런 곳들에 기재부 차원의 뭔가 정책적인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되게 불만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예타 제도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는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런데 지금 예타의 가중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면제 부분은 또 뒤에 나오니까 가중치에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만 이 가중치와 관련된 부분들……

수석님, 앞에서 이게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법률에 직접 규정 시 제도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정부 의견, 저는 조금 시각이 다른데요.

지방의 문제는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2019년도 제도개선 이후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은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 준다는 차원에서도 이 규정 자체는, 구체적인 수치를 부여하는 게 법에 규정되는 게 아니고 수도권 외 지역……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부여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법에 담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전향적으로 정부가 이 문제에 접근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김영진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그다음에 정일영 위원님 등 수도권 위원님들께서 아까 기준금액 상향하는 데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하고 있는 가중치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금 수도권에도 인구가 많으니까 가중치 좀 올려 달라……

○**김영환 위원** 접경지역.

○**박수영 위원** 예, 접경지역이든 어쨌든 수도권은 인구라도 많으니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지역에는 인구가 지금 다 줄어 가지고 B/C만 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B/C가 나올 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 부분을 수도권까지도 확장하자는 것은 저는 반대고요.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 아니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그래서 소멸의 위기에 속한 지역은 그것을 더 올려 줘야 되는데 그것을 굳이 대통령령에 담지 않더라도 법률에 선언적인 의미라도 좀 담아 주시기를 저는 바라는 거지요. 이것을 시행령으로 보내면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하니 법률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넣어 줘도 저는 훨씬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예타 관련해서는 너무 쟁점이 많네요.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비슷한 취지라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조문을 봤습니다. 어쨌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부여하는 취지에는 공감하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지 봤더니 지금 국가재정법 38조를 잘 보시면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500억 이상 대형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왜 하는 거고 조사 방법이 뭔지, B/C 분석을 하는 건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이런 것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일언반구 언급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선언적 규정으로 들어가기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게 국가재정법 38조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골격을 법에 잡아 줄 것이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것을 좀 검토한 다음에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마지막으로 차규근 위원님.

○**차규근 위원** 수도권 위원님 또 비수도권 위원님이 미미한 입장 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 의견으로는 일률적인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보다는 예를 들어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한해서 가중치를 높이는 등 그 목적과 대상을 좀 구체화해서 입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렇게 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역낙후도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그야말로 수도권을 보완하는 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또 국가 전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법에 균형발전 이게 들어가는 것은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일단 재논의로 놔둘 테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마이너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타 할 때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고양시 같은 게 들어가 있다는 말씀 그냥 마이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저는 의원님들 취지가 지역균형발전 부분에 있어서 지침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법 안에 그 취지를 반영하자라는 게 대략적인 취지라고, 저는 여기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의 내용을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6항 후단에 넣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마련하여’ 다음에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 조항을 넣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취지가 법에 분명히 제시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에 보면, 43페이지에 지역균형발전의 비율이 30~40%가 들어 가지 않습니까, 건설사업인 경우. 그게 더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법안을 발의하셨던 의원님들의 뜻도 이 법안에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정부는 그 취지에 맞게끔 지역균형발전의 비율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명확하고 책임성 있게 반영할 수 있는 거지요.

퍼센티지 보세요. 43페이지에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에서 최소로 다 합하면 100%가 안 되고 최대도 합하면 125%예요. 이런 비율도 웃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플렉서블하게 돼 있어서 기재부에서 뺄 수 있어요, 제가 보면. 지역균형발전을 30%로 확 줄이고 경제성은 45% 놓고 그다음에 정책성을 25%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대, 최소가 확 줄어 버려서 의미가 과연 반영이 될까라는 게 있는 거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하여튼 그런 구체적인 것은 그렇고.

○**정일영 위원** 제가 한마디……

○**소위원장 정태호** 아니, 충분히 됐으니까. 지금 가야 될 길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을 만들어 오기로 하고 나중에 재논의한다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45페이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러니까 이것은 예타 면제대상이 주된 내용이지요.

수석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1항부터 15항까지가 예타 면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중의 3건에 대해서 45쪽에 정리하였습니다.

개정안들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관한 것인데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되었습니다.

46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인데요.

현행 국가재정법 38조 2항에서 공공청사 신·증축 사업이나 법령추진 사업, 긴급한 경

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타조사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유지보수 또는 역량강화 사업,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증축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이 수월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지역소멸 위기 및 양극화 심화로 인한 지역·계층 간 의료서비스 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같이 고려할 점이 있는데요.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면제의 범위 확대는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현행 법령에서도 예타조사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48쪽에 보건복지부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요. 현행법으로도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예타 면제가 가능하고 경제성 분석의 편익 항목을 확대하는 등 공공의료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한 점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으로서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소도시 지역 외에 의료기관이 충분한 대도시 지역까지의 예타 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축보다 민간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 확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전문위원 설명 잘해 주셨는데, 49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아주 예외적으로 공공청사 같은 경우만 별도로, 예타 필요성이 없는 경우만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제외하는 부분은 정부 입장에서는 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현행 법령으로도 국무회의 거쳐서 예타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신중하게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질문 또는 토론해 주시지요.

○김영진 위원 차관님, 이번에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해서 각 대학이나 의대 관련한 사업들 중에 예타 면제 사업 없어요? 금액이 다 현 기준 500억 미만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예타 신청이 들어온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요.

○김영진 위원 없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정일영 위원 김영진 위원님 말씀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국립대학교 의사가 부족해서 지금 현재 300명, 320명인가 모집공고 내고 있고 3년간 1000명 그다음에 병원에 투자되는 게 앞으로 4년 동안 5조 원이던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재정에서 2조, 건보 2조 해 가지고 향후 5년간……

○정일영 위원 5조예요. 5조,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게 보면 의료기자재도 있지만 건축물 투자, 꽤 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시고 해서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점심시간에 해서 오후 시작할 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살펴보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아마 코로나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사태가 났을 때에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공공병원을 더 짓자고 하는 것 같아요, 법안들이.

그런데 저희가 공공병원 운영해 보면 지역에는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공공병원을 지으면 적자가 가속화되는 문제가 있어서 공공병원을 폐쇄한 지방자치단체도 있거든요.

공공병원을 추가로 지으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옆에 있는 민간병원들이 또 클라우딩 아웃 되는 겁니다, 공공병원이 더 싸고 시설이 더 크니까. 그러면 민간병원들은 점점 죽어 가서……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원 짓기 위한 시설들의 예타를 면제해 주는 것은 저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 민간병원들 잘못하면, 수도권에는 팬찮겠지만 지역에 지으면 거기 기껏 있는 민간병원까지도 전부 서울로 올라와 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

○이종욱 위원 예타 면제는 사실 최소화해야 되고요. 지금 법조문도 보시면 공공청사나 문화재 복원처럼 어차피 해야 되는 것, 무조건 해야 되는 것만 면제되고 나머지는 다 정책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이라고 일반화해 가지고 이것을 전체 면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일영 위원 짧게 한 번 더……

○소위원장 정태호 예.

○정일영 위원 이것도 앞의 위원님 말씀은 정부 의견하고 대체로 같은 생각인데 앞으로 코로나나 이런 감염병, 팬데믹 현상 일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공공의료가 강화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새로 공공병원을 크게 짓기 위해서 예타를 면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들이 기존에 있는 민간병원, 대형병원들을 재난병원 형태로 지정을 하면 예산 투입을 안 하고, 지난번 코로나 때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빅5 등 큰 병원들의 병상 확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지시가 안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재난병원을 지정해서 정부가 평상시 조금 지원을 하고, 재난병원으로 지정해 놓으면 코로나나 팬데믹 현상 있을 때 병상 확보가 쉬워지면서 지금 이 법안에서 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의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 투입을 줄이면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확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

정부는 여기는 신중해야 된다 그러는데 반대한다라는 얘기인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진 위원** 신중하게 반영해 주세요.

○ **소위원장 정태호** 일단 이것은 계류시켜 놓겠습니다.

다음이요.

○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다음, 55쪽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증축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재정법 50조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은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타당성 재조사 대상 사업 중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증축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타당성 재조사를 별도로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타당성 재조사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가 필요한데 주무부처가 이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김선민 의원안은 아마 관련 전문, 의료계의 정확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신 것 같은데요. 현재도 저희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관련 전문기관이랄지 그쪽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의 체계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박수영 위원님.

○ **박수영 위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의료기관 결정하기로, 이런 것을 처음 터 주게 되는데 터 주게 되면 각 부처가 다 달려들 겁니다. 이것 우리가 판단하겠다 이렇게 되면 국가재정이 겉잡을 수 없이 많이 늘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삼의 중립적인 기관에서 판단을 해 줘야지, 각 부처는 자기 것 다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것을 터 주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지금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대출 위원** 저 같은 의견이에요.

○ **박성훈 위원** 저도 타당성 재조사가 도입되게 된 취지나 도입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식으로 모든 부문에 대해서 확대될 우려가 있는 개정안의 내용은 조금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찬성하는 분은 없어요?

○ **김영진 위원** 찬성합니다. 기재부장관만 판단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도 나라의 장관으로서 적정 재정과 타당성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 **소위원장 정태호** 이것은 정부도 반대를 하고 위원님들도 반대 의견이 많기 때문에 계류를 시켜 놓겠습니다.

○ **차규근 위원** 찬반을 떠나서 관련 법안이 지금 복지위에 계류 중에 있으니까 그 법안

논의되는 것 봐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예.

다음, 59페이지예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59쪽입니다.

개정안은 지역·필수의료기금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재정법 5조에 따라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으므로 기금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동 법안들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재정법 14조에 따른 요건을 참고하여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들에 대해서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심사 경과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전문위원 말씀하신 취지도 있고 차규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면 저희가 반영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이것은 계류가 되는 건가요?

○박수영 위원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계류시키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한 가지 질문만……

○소위원장 정태호 예.

○이종욱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아까 법사위 이야기했잖아요, 법안 개별 상임위에서.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예.

○이종욱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같은 게, 만약에 상임위에서, 복지위에서 통과되어서 법사위에 계류됐다 그러면 기재위 의견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나요, 법사위가?

그런데 제가 사례를 보니까 법사위에서 먼저 일방적으로 법안이 통과돼 버리고 공포되고 그 뒤에 기재위가 따라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기재위하고 법사위가 상의해서 조율하는 절차를 전문위원 간에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최대한,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기재위에 계류 중인 법안과 연계된 경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상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종종 이게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절차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음은 64페이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64쪽입니다.

14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인 접경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철도의 확충 사업과 관련한 것입니다.

지금 65쪽에서 보시다시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신설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인구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인 접경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철도의 확충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또 법 시행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 예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타 면제를 통해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접경지역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대는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 현행 국가재정법하에서도 가능하다는 점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말씀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이 부분은 지난 21대에서 논의가 있으셨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접경지역이랄지 지역낙후도 부분에 대한 고려는 정부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반영해야 되겠지만 법에 이렇게 특정 분야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국가재정법, 특히 예타 제도를 완전히 형해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부는 반대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우리가 경기도하고 강원도의 접경지역이 열다섯 곳이 있습니다. 이 법안대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고양시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표현은 이렇게 돼 있지만 고양시를 위해서 이 법 조항을 바꾸자고 하는 것인데 특정 도시를 위해서 법률을 바꾸는 거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박대출 위원** 동의합니다.

○**이종욱 위원** 저도 반대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황명선 위원님.

○**황명선 위원** 그 취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고양시 한 도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서울하고 연결돼 있는 광역철도망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의 예타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진이 어렵거나 추진이 더디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손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만 예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고민해 볼 수 있어요. 지금 하나의 도시를 위해서 이렇게 법조문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 서로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 속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서울과 연결해 있는 고양시에 광역철도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업의 자연 아니면 사업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박수영 위원** 고양시는 사실 상대적으로 철도망이 잘돼 있는 곳입니다. 지하철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데다가 또 GTX가 개통을 지난주에 했던가요, 이번주에 하든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잘돼 있는 지역이라서 기기를 특정 대상으로 넣는다는 건 너무 좀 과유불급인 것 같습니다.

○**황명선 위원** 지금 이 법안이 고양시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지금 50만 이상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법안이라고 봐야 되나요?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이 표현대로 하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인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이 열다섯 곳이 있고요, 50만 이상인 곳은 고양시 딱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지요.

○**황명선 위원** 예를 들면 김포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48만 아닙니까. 김포도 이런 사업들을, 서울 인접해 있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타 때문에 국가적 손실 또 지역주민들의 교통에 대한 불편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48만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한 1, 2년 있으면……

그래서 이것은 특정한 지역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서울과 인접돼 있는 도시에 대한 철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에 대한 편리성, 사업에 대한 지역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박수영 위원** 기재부에 말씀하세요. 왜 저한테……

○**황명선 위원** 저는 어디 도시까지는 몰랐는데 위원님께서 고양 한 도시 얘기하니까…… 저는 김포 같은 경우가 바로 한 1년 이내에 50만 도시가 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김주영 의원께서 발의를 한 건데 오죽하면 이렇게 발의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 보면 김포에서 서울 출근하는 사람들의 출근 시간에 보면 대형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러면 서울로 또는 수도권에, 교통수단이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런데 현행 제도로는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 힘들고 그쪽은 지금 또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수단이 없으니까 이런 법을 제안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의 개정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적으로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한번 와보세요. 이거는 재논의로 제가 남겨 둘 테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5호선 연장 포함해서 정부도 나름 고심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오후에 주시지요.

○**박대출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만 첨언을 하면, 5호선 연장 문제 빨리 결론 내야 되고요. 지금 김포골드라인 2량만 운행을 하는 문제를 제가 2.5량 내지는 3량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계속 소극적이에요, 정부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이것 해결 못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정태호**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저도 박대출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사안 관련해서는 이렇게 법안까지 올라온, 그러니까 단일 사안이지요, 사실은. 김포를 대상으로 한 법안인데 여러 차례 정

부에서, 서울시장께서도 그러시고 대안을 마련해서 같이 하겠다라고 선언적인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혹시 파악한 것 있어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 그쪽 강서구, 서울시, 김포, 이견이 좀……

○**박대출 위원** 서로 이견 때문에 그러는데 이견을 빨리 조정을 해서 결론을 내야지.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결론을 내서, 사실 서울시장도 그렇고 다 하자라는 총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이게 계속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사고가 나면 그 현장에 가서 살펴보고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김주영 의원이 법안으로 낸 거 아니에요.

○**박대출 위원** 답답하니까 이런 법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정은 이해를 해야 돼. 이런 특례를 만들어 줬다는 게 지금……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저는 법안으로 올라오기 전에 정책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가능한 사업이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관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을.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법안으로 올라오지 않는 전 단계에서. 그래야지 김주영 의원한테 말씀을 드리지요.

한번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하여튼 재논의로 분류해 놓고요. 오후에 안을 좀 가져오세요.

다음은 75페이지, 15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개정안은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의 예타 면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76쪽에 보시면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그리고 도로법에 따른 도시건설·관리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고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비수도권에서의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도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앞서 말씀 취지와 동일하게 이 부분은 전체 예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부분이라 정부 입장에서는 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달리 특별한 의견은 없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류합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다음, 82쪽입니다.

제정건전화 법안과 3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 및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83쪽에 보시면, 제정건전화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목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건전한 재정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재정건전화 정책을 마련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소속으로 재정전략위원회를 두고 국가채무준칙과 재정수지관리준칙을 두며 국세감면을 제한하고 PAYGO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주로 재정준칙을 담고 있습니다. 예산안·추경안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고, 다만 직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초과가 예상될 때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하로 편성하는 등의 내용이고요. 준칙 적용의 예외와 재정준칙을 초과할 경우 대책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AYGO를 확대하거나 세계잉여금 활용한 채무상환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건전화법 제정하면서 현행법상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안과 개정안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은 제정안·개정안의 입법취지 및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현재 D2 기준으로, 일반정부 부채 기준으로 GDP 대비 51.5%입니다, 23년 기준으로요. 그래서 아직까지 타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복지성숙도나 기축통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 및 전망인데요. 국가채무가 2017년 정도에는 34.1%의 수준이었는데 지금 2024년에 47.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86쪽입니다.

국제적 재정준칙 도입 현황을 보면, IMF에 따르면 21년 말 기준으로 최소 하나 이상의 재정준칙을 채택한 국가가 약 105개국인데 그중 수지준칙과 채무준칙을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준칙의 근거를 헌법이나 법률, 국제조약에 둔 국가가 현재 97개국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정안의 경우는 채무준칙과 수지준칙을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하고 개정안은 수지준칙을 적용하되 채무지표를 보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정준칙을 법률에 근거하여 도입한다면 재정건전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하며 향후 재정소요 대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과 개정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보았는데요 우선 국가재정의 유연한 대처 가능 여부나 복지지출 위축 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준칙 수준이 재정건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참고로 주요국의 재정준칙 도입 사례 등이고요.

90쪽에 보시면 21대 재정준칙 관련 심사 경과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92쪽에는 21대 국회 당시의 개정 필요 입장과 신중검토 입장을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94쪽의 제정안·개정안 규정 방식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제정안은 법률안 제정을 통해서 그리고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안과 개정안은 재정준칙을 법률에 규정하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목적을 가지지만 재정준칙의 수준이나 PAYGO 원칙의 확대 범위 등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함한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국세감면율 준수 의무화, 재정 개혁포상금 등의 내용도 추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때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지 그리고 기존 법률을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95쪽에서 제정안과 개정안을 비교하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채무준칙이나 수지준칙을 모두 다 부여한 것이 재정건전화법안이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금 관리재정 수지, 그래서 수지준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부터는 조문별 검토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아예 이것 조문을 그냥 다 설명해 주세요, 어차피 통으로 한번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은 목적 및 정의로 제정안을 둔다면 필요한 조문으로서 일부 자구 정리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재정건전화 책무를 제정안에 두고 있습니다.

재정건전화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중앙관서의 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재정건전화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재정전략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제정안에 있습니다. 재정전략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심의사항은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및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의 이행 상황 관리 등입니다.

재정건전화 제도가 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험·공공기관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전략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고, 다만 재정전략위원회를 행정부에 둘 것인지 입법부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재정준칙 법제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제정안과 개정안 모두 포함된 내용으로 재정준칙 수준은 제정안과 개정안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칙 적용의 예외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준칙 허용한도 초과 시 조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칙 수준의 적정성은 국가채무비율 허용한도가 적정한지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 또는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가 적정한지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10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재정준칙의 기준에 대해서 먼저 보시면 부채의 기준을 제정안과 개정안은 모두 국가채무(D1)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1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국제적 비교는 주로 D2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정부 부채 기준이고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수지의 기준은 제정안과 개정안 모두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준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가 아직 흑자인 우리 상황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성숙해진다면 통합재정수지가 더 엄격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재정준칙 수준인데요. 지금 제정안의 경우는 국가채무비율 45%, 재정수지 적자 2% 이하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해외 상당수 국가가 채무비율 60% 수준 또는 재정수지 적자비율 3%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엄격한 수준입니다.

여기 표에서 음영으로 칠한 부분이 재정준칙 준수 여부를 과거에 빗대서 살펴본 것인데요. 2015년의 경우나 2019~2025년까지 수지준칙은 모두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경우는 해외 상당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재정준칙 수준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을 살핀 안으로 보이고요.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까지는 재정준칙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재정준칙 적용의 예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과 개정안 모두 추경 편성의 주된 사유인 전쟁, 대규모 재해 그리고 경기 침체 등 대내외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준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준칙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최근 10회계연도를 살펴볼 경우 2023년과 2024년을 제외한 8회계연도에서 추경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다르게 재정준칙 도입 의미가 희석될 우려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준칙 허용한도 초과 시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 우선상환 조항이 있는데요. 준칙

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정안의 경우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교부세법 등에 따라서 국세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를 정산하지 못하고 이에 우선해서 국가채무를 상환한다면 지출의 이연 효과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준칙 수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박대출 의원안에만 있는 내용인데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 의무화고 이는 제정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현행 국가재정법이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를 노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하고 국세감면 관련 준칙을 엄격히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엄격한 재정 규율이 필요하고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를 의무화한다면 경기 회복이나 민생 안정 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재정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탄력적인 정책 대응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부가 정한 국세감면율 한도에 따라 예산과 법률안 내용이 구속되어 국회의 심사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또 국세감면율은 세법 등 개정 시에는 확정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의무 규정으로 운영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1쪽 PAYGO 원칙입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지금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할 때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경우 이를 보다 구체화해서 기존 사업의 축소·폐지나 제도개선을 통한 조정 방안 또는 수입 확충 방안 등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작성해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정안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작성해서 법률안에 추가하도록 하는데 그 대상을 정부뿐 아니라 국회의원 발의 법안 또는 위원회안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23쪽에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비용이나 세입 감소가 수반되는 법률안이 시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려할 점이 제정안의 경우 PAYGO 원칙을 국회의원 및 국회 상임위·특별위 발의 의안에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24쪽에서 보시면요, 박대출 의원안의 경우에는 정부 제출 법률안에만 PAYGO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정부 제출 법률안이 현재 미미한 수준으로 국가적 관점에서 법률안 개정에 따른 지출 억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정안의 경우는 국회법 개정 사항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제정안과 국회법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국회법도 추가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27쪽은 공공 부문의 재정건전성 관리 관련해서 제정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지자체장의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해서 지원·관리하고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실적을 기재부장관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요. 사회보험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계획도 수립하여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사회보험의 경우 개별법상 규정되어 있는 장기재정전망과 제정안의 관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2쪽의 재정개혁포상금 지급입니다.

제정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으로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인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재정건전성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만 현행 국가재정법 49조가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2개의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4쪽의 장기재정전망입니다.

제정안은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로 하여금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되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 시 주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급변하는 대내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재정건전화계획 등과 관련된 재정 정보 및 통계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형법 규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확대인데요. 이건 박대출 의원안에 있습니다.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세계잉여금의 비율을 지방교부세 정산 및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후 잔액의, 지금 현재 3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재정건전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0쪽인데요.

제정안을 할 경우 국가재정법의 동일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조문 정비상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43쪽의 재정준칙의 도입 시기 등에 관한 부칙 조항입니다.

재정준칙을 어느 시점에 도입할지는 빠른 도입을 통한 재정건전성 관리 측면과 그리고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챙점은 다 파악하셨지요?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소위원장 정태호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재정준칙 관련 등은 다 설명을 해 주신 거지요?

○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예.

○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지난 21대에 정부가 정부안을 제출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셨고 마지막에 경제재정소위에서 대안 마련까지 상당 부분 논의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최종적으로 법안 처리가 못 됐던 부분 정부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송언석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는 아주 좋은 안을 주셨는데 이 재정준칙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워낙 오랜 역사가 있고 논의가 워낙 길었기 때문에 정부는…… 박대출 의원님께서 아마 지난 경제재정소위의 대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1대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접근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 주시되 마찬가지로 지난 21대에서도, 오전에 논의하신 예비타당성만 논의가 되고 재정준칙만 논의가 될 경우 재정건전성에 대한 언론 비판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정부의 희망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 박대출 위원 제가 21대, 22대 두 차례 법안을 낸 대표발의자고요. 이번 22대에 낸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에 많이, 심도 있게 논의했던 내용들도 반영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고 한데 이번 22대 국회에서 소위가 처음 열리는 만큼 소위에서 우리가 유념하거나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기록 차원에서 몇 가지 정리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준칙 문제는, 문제인 정부 시절에도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인지했고 또 지금하고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의 재정준칙 입법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채무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10년 동안 논의가 미루어져 왔는데 더 이상은 미룰 실익이 없다는 점 그리고 OECD나 국제기구나 신용평가사 등에서 한국의 재정준칙 입법화에 주목을 하고 있고 한국에 여러 차례 경고도 한 점 그리고 비기축통화국과 기축통화국 간의 차이를 우리가 충분히 인식해서 한국 재정 여력의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을 해야 되는 점 그리고 OECD 회원국 중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밖에 없다는 점, 재정준칙은 전 세계 105개국에서 도입하고 있다는 점 또 특히 이 법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런 준칙을 마련했을 때 국가재정 운용의 탄력적인 관리가 어렵지 않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여기 예외 조항을 둬 가지고, 전쟁이나 재해나 경제위기 등의 예외 조항을 발동해서 위기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하여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전향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다들 적극 검토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차규근 위원님.**

○**차규근 위원**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 의무화 내용이 송언석 의원님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내용 중에 있는데, 이게 제가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도 있고 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에도 관련 내용이 있는데 소위에 계류 중인데도 어떻게 이게 안건으로 함께 상정되지 않고 송언석 의원님 법안만 이번에 심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정부가 제시한 관리재정수지 -3%와 국가채무비율 60%를 넘을 때 관리재정수지 -2% 적용한다는 것은 관련 해당 수치의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서 수치 근거를 제시하지만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D1 기준으로 46.9%인데 아까 여기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D2 기준으로 하면 55.2%, 그래서 이걸 D1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적인 재정준칙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성 제고를 위해 암묵적 재정준칙을 실질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한 방안이라는 KDI의 2018년 보고서 그리고 불확실한 경제환경에서는 재정준칙이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오히려 정책 집행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2015년도 IMF의 지적 등을 고려할 때 좀 곤란한 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의견입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박대출 위원님께서 기본 필요성은 잘 말씀해 주셨고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재정준칙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다 그리고 올해도 IMF가 한국은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제 의견을 일부 말씀드리고요. 저는 21대에서 합의된, 물론 통과가 중요합니다만 제정안과 개정안을 비교한다 그러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측면에서는 제정안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지준칙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채무준칙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가채무의 목표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언석 의원안은 45%입니다만, 45%가 될지 EU처럼 60%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채무의 목표도 숫자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지준칙에 대해서 지금 -3%를 당연한 것처럼 취급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라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국가채무가 1년에 70조, 80조씩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독일처럼 오히려 수입·지출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저희들이 경계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우선 말씀드렸고.

한 가지, 아까 차관이 답변한 것 중에 재정건전성·재정준칙과 앞서 저희가 논의한 예타 기준 상향과 같이해야 된다는 약간 불분명한 말씀을 주셔서…… 그러니까 한쪽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 입장은? 2개가 동시에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한쪽만 되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

린 예타는 현장의 어려움과 그런 고려를 했을 때 이것은 현장의 어려움에는 필요하지만 반대로 그러면서도 정부가 재정건전성은 지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2개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욱 위원** 아까 위원님들 논의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는 안 됐거든요. 정부가 SOC와 R&D에 한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이런 걸로 이해했는데, 재정준칙과 연계되지 않으면 예타 기준 상향이 정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이종욱 위원** 그렇게 다시 고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아까 점심 먹으면서 보니까, 관련해서 문화일보에 기사가 났는데 정부 재정지출이 많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예타 기준을 올리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나가자마자, 점심 먹으러 갈 때 기사를 보니까 우리 하고 있는데 문화일보에 벌써 그렇게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는 건 올리고 재정은 지출을 줄이는 노력, 예를 들면 재정준칙 같은 것 왜 안 하느냐 이런 기사가 문화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욕을 먹을까 봐 조금 염려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 기준을 상향하는 건 동의를 하지만 재정준칙과 연계시켜서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었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소위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쉽게 가려고 하는 데 대해서 여야가 같이 뜻을 모은 것처럼 비쳐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재정준칙이라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총량 관리 률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같이 저희가 설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포퓰리즘이라는 과거의 비판에 다시 한번 직면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준칙과 관련해서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워낙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는 재정의 성격이 한 번 확대를 시작하면 다시 줄이기 힘들다는 것, 그래서 과거에 재정 중독에 빠진 한국이라는 비판을 받았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미래 재정 여력을 위해서는 지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라고 하는 국가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미래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총량 관리가 필요하고 재정준칙은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준칙과 관련해서는 재정준칙 이행의 강제라든지 제재 수단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되면 야당 위원님들도 설득하기가 용이하고 또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정부가 하려고 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는 또 재정준칙 제정으로 재정의 경기부양 기능이 제한된다는 비판 또는 지적도 있을 수가 있는데, 총수요 측면의 경기부양책으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통화나 금융정책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총공급 측면의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재정준칙이 유력한 정책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보다 특히나 더 엄격하게 재정준칙을 준수하고 유럽 국가들의 재정 운용 경험도 저희가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논의가 진행되고 나서 저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독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획기적인 재정준칙을 헌법에 규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도 재정준칙의 엄격성과 유연성이라는 두 가지, 이것에 대해서 상충 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타라든지 이런 제도와 또 재정준칙을 어떻게 연결시킬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정부에서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분이요.

### ○김영환 위원 저는 수많은 말씀들을 드리고 싶지만……

일단 내년 경제성장률이요 국제투자금융기관들이, 지금 바클레이스 1.8%, JP모건 1.8%, 씨티 1.8%, 노무라 1.9%. 지금 잠재성장률 밑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가 2.0으로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정정책의 효과성 그다음에 통화정책의 효과성 이 부분들은 학계에서는 정리가 이미 돼 있다고 저는 봐요. 금리로는, 사실은 이게 소 잡는 칼이잖아요, 거시경제를 끌어가는 거고. 재정정책은 부분별·섹터별·산업별 그 부분으로, 예를 들면 수요가 부족하면 수요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 주고 또 투자 관련돼서도 정부의 재정 역할이 되게 중요한 때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걸 딱 한도를 뚫어 놓고 탄력적이지 못하게 해 놓으면, 사실은 신통화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요새 무슨 주장까지 하느냐 하면 정부 마이너스는 민간의 플러스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 재정정책이 한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삽시간에 그렇게 크게 올릴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마이너스를 내는 상황에서 민간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플러스를 시키느냐 그 과정이 사실은 효율성 문제지 이건 정부의 재정정책의 원칙, 철학 이것과도 연계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재부가 재정준칙을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3년 동안 세수 평크 내고 내년도도 세수 평크 나고, 관리재정수지 못 맞추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국가부채는 기금으로 돌려 가지고 국가부채 총액을 안 늘리려고 관리하고 있고.

기금이 뭡니까? 그건 재정준칙 적용이 안 돼요? 왜? 그냥 여유재원이라고 기재부가 판단하면 그것 갖다가 쓸 수 있고. 뒷구멍으로는 열어 놓고 국민들 청약통장, 주택도시기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줘야 될 돈 안 주고 거기서 갖다가 쓰고 있고. 다 미래 재원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기재부가 마음대로 갖다가 쓰면서 재정건전성 얘기하고 재정준칙을 가져온다라는 건 정말 앞뒤가 안맞는 모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부채 D1 기준으로, 국가부채 비율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맞춰야 되니 어찌느니 하지만 국제 비교를 한번 해 보자고요, 객관적으로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대한민국은. 또 그동안 국가부채 안 늘리기 위해서 여러 다른 용도로 또 기재부가 써 왔었고.

그런데 이제 막상 우리가 재정지출의 수요들이 있는 때에 그런 게 마중물 역할을 못하면, 무슨 인구 위기니 무슨 저출생 위기니,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예산들은 다 정리해 놓고 실제…… 재정건전성이라는 이유로 계속 안 쓰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써서 경제성장률도 올리고 민간 수요도 올리고 소비도 올리고 그리고 그쪽에서 투자 여력도 확보시키고 그게 다시 세수로 들어와서 그렇게 재정건전성을 이루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재정정책의 균등화라는 그 작업들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인데 건전성만 계속 들이대고 총지출 줄이려고만 하고 막상 써야 될 공간들은 지출을 줄이고 이런 엇박자들이 저는, 지금 재정준칙 법제화 관련돼서 가져오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철학적으로도 동의를 못 하고 경제학적으로도 동의를 못 하고 현실적으로도 동의를 못 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하기도 하다, 이걸 강제화시켰을 때. 재정 탄력성을 줄이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반대 의견을 강하게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또.

○차규근 위원 발언 한 번 더 해도 되나요?

○소위원장 정태호 예.

○차규근 위원 아까 오전 논의에서 예타 기준이 상향됐기 때문에 재정준칙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걸로, 그걸 연계시키는 게 적절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약간 있습니다. 재정준칙을 중심으로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예타 면제 기준을 상향했기 때문에 재정준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오전 회의 때도 저는 그 관련된 법안이 다른 상임위에서 아직 심사 중에 있거나 법제처,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순식간에 금액 상향에 대해서 논의가 그냥 급박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기는 됐습니다마는 저는 금액 상향도, 500억에서 1000억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찬성하는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오전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건 뭔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반대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논의를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그런데 세수결손 문제하고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하고 재정준칙 만드는 것은 꼭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들은 OECD 중에 우리나라하고 튀르키예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모든 나라들은 재정 역할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재정 탄력성 문제는 또 재정준칙하에서 다른 여러 가지 보완장치로 얼마든지 확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지금에 들어서 재정준칙 논의를 하는 이유가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재정건전성이 계속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일정한 정도의 재정준칙을 지키는 노력을 하자, 그래서 이런 재정준칙 논의가 시작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상황은 어렵습니다만 그럴수록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 재정준칙을 만들기 위한 논의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이것 이번 22대 국회에서 처음…… 제정법안이지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제정법이 있고……

○**김영진 위원** 송언석 의원님 안은 제정법이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송언석 의원님은 제정안을 내셨고……

○**김영진 위원** 송언석 의원님 안이 1조부터 전체적으로 쭉 총괄하는 법안이고 나머지는 개정안이잖아요. 부분개정안이라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박대출 의원님하고 박덕흠 의원님은 개정안이십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부분개정안이지요.

그래서 이전 기재위에서 논의된 바도 있지만 저는 새로 이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오신 분들이나 전체 기재위에서 한 번 정도는 제정법안의 원칙에 맞게끔 보고하고 짤막하게라도 공청회를 하면서 절차를 지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전부개정안이나 제정법인 경우 공청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 사안인데 이 사안은 현재 공청회를 안 거치고 지금 논의에 올라왔거든요.

수석전문위원님, 혹시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냥 공청회 안 하고 제정법안을 바로 소위에서 논의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대략 다 공청회라는 절차와 과정을 약식으로라도 거치면서 논의를 진행하는데.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간사 협의에 따라서 생략하기도 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요?

이게 간사 협의해서 생략한 겁니까?

○**박수영 위원** 논의한 적이 없는데.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제정법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전체의,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라서 소위 차원에서 간략하게 논의해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전체 기재위원회를 대상으로 공청회라는 과정을, 그동안 21대에 했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하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하든지 하더라도 전체 논의를 한번, 숙려를 해서 하고 거기에 동의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전체회의에 올라가도 이게 의결되지 여기서 논의한다고 해도 전체회의 가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아주 다 민감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적으로는, 저는 후반기 재정준칙 관련한 법안 때는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저도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저는 봐요.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면서 실제로 관리재정수지도 3.0%를 3년 연속으로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실제로는 국가부채의 수치를 지킨다고 하면서 기금, 여러 가지 돈을 끌어다 쓰고.

그런데 국가 총량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과연 그게 재정건전성에 맞게끔 재정 운용을 했나에 대한 평가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수치를 맞췄지만 결론은 기금이나 이걸 다 끌어다 썼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총자산의 총량으로 보면 준 거지요. 건전성이 나빠진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돈을 쓰는 게 재정 중독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재정건전성 포퓰리즘도 있다라고 봐요. 마치 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선이고 좋은 것인 양 그런 생각의 가치관에 빨려 가는 그리고 그런 것에 의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그것도 적정하지 않다. 적정 재정의 적정 지출을 통해서 국가 전체적인 경제와 국민의 삶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큰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전 정부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했고 또 추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 했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번 정부에서 보니까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번 2025년 예산안을 논의하고 있는 시기에 내년 상반기의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차관님, 내년 상반기 추경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검토한 바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정보나 소식이나 기사는 대통령실과 여당발 아닙니까. 저희들은 한 적이 없으니까.

왜 나왔다고 보세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제가 알기로는 사실이 아닌 결론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긴축정책과 긴축재정으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데 한계에 왔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나 긴축재정, 감세 기조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 이 정부 2년 경제정책을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한 반론에 의해서 내년 상반기 추경에 대한 얘기들이 본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일부에서 나올 수 있는 사안인 거지요.

저는 검토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가면 재정건전성도 지키지 못하고 경제도 안 좋아지고.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상황에서 엄격한 재정준칙을, 지키지도 못하는 재정준칙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45% 어떻게 지켜요.

그래서 저는 논의를 현실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약식 공청회라도, 21대 논의했던 안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라는 자리를 통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논의에, 본인의 의견을 좀 내고 축조 논의라고 하더라도 저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뒤에 나오는 사회적경제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나오는 한 권짜리도 거의 제정법에 준하는 정도의 내용이라서 이것도 저는 절차를 잘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 법안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법안도.

이상입니다.

○박대출 위원 잠깐만 하나 간단하게 여쭙……

○소위원장 정태호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서……

○박대출 위원 질문 좀……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짧게 하시지요.

○박대출 위원 코로나 위기는 경제위기입니까? 정부는 또 경제위기를 어떤 걸로 보고 있습니까? 잠재성장률을 밑돌 때는 경제위기에 포함되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정부는 2분기 이상 마이너스성장 했을 때를 경제위기로……

○박대출 위원 잠재성장률을 어느 정도 밑돌 때 기준이 좀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렇게 평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대출 위원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지금 전 세계 105개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준칙을 우리만 외면하고 외딴섬이 되는 갈라파고스 국회에 대한 질책이 주요 언론들로부터 술하게 있어 왔고 또 앞으로, 오늘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우리 소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과 질책이 아마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훈 위원 아주 짧게만……

○소위원장 정태호 예, 하셔요.

○박성훈 위원 저는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 지속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은 당연히 건전성이겠지요. 그런데 재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들이, 재정의 정치화를 우려한다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결국 재정은 항상 적자 편향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나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재정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우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아마 결론이 나지는 않겠지만 야당 위원님들의 우려와 여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조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게 21대 국회에서도, 상임위에서도 그야말로 아주 침례한 입장 차 이를 보였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각자 다 논거가 있고요. 예를 들면 다른 나라들 다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왜 안 하냐. 그런데 다른 나라들 상황을 보니까 실제로 지켜지는 나라 별로 없더라 이런 결론들이거든요, 학자들 의견이.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재정 규모에서 재정 규모를 늘려야 되는 노력은 안 보이고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게 맞냐 이런 지적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영진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우리 소위에서 그냥 결론을 내리기에는 쉽지 않은 주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전체 상임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을 기회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여부는 간사끼리 협의해서, 위원장과 상의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고 일단 이것은 계속심사, 공식 용어로는 계류시켜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간단히 몇 말씀만 드려도 괜찮을까요?

○소위원장 정태호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일단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시고 야당 위원님들 말씀하신 정부가 3년 연속, 지금도 못 지키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속을 좀 더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스스로 재정준칙을 만들겠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좀 기술적인 사항을 말씀드려서, 아까 차규근 위원님께서 이게 원칙이 뭐냐, 3%, 60%. 전문위원 만드신 자료의 110페이지에도 보시면, 이게 크게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지 준칙 거기다가 채무준칙을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만든 것도 그렇게 정치하다라고, 상당히 의욕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운데 정도 보시면 경상성장률이 그것도 향후 상당 기간 4%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78%까지 채무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라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요.

88페이지 보시면 여러 국가별로 자기네들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네 준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하단의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이미 국가채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이자 상환분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만 겨우 흑자로 가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한 부분은 없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국가채무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정부가 이 정도로 충분하느냐라는 게 아니고 충분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3%, 60%를 제시했다는 말씀을 차규근 위원님께 크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류하고요.

2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의사일정 제20항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이것을 통으로 다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도 역시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아주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꼭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의견들을 듣고 결론을 내리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자료 2권입니다.

심사 안건은 황명선 의원안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용혜인 의원안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입니다.

2쪽에 보시면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황명선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목적부터 정리를 해 봤고요.

목적은 우선 사회적경제의 공통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도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로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금융 등을 정의하고 국가 등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민간참여·국제 협력, 공개·공시의무 등 총 7개 장 47조에 해당하는 방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5쪽에서 제정안 두 건을 비교하였는데요. 보시다시피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유사한 내용이 많아서 조문은 황명선 의원님 안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서 제정안의 입법 취지 및 입법 필요성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각 법률안은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빈부격차, 고용불안,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저고용 등의 문제를 시장경제원리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제인 사회적경제를 체계적으로 지원·정책시키기 위해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21대 국회에서 공청회와 법안소위 등 논의가 있었고 20대 국회에서도, 19대 국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법 제정 여부는 과거 국회에서의 논의 사항이나 개별 법률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와의 관계 등을 함께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9쪽부터는 지난 국회의 쟁점별 논의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은 21대 국회의 공청회 진술 요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그리고 18쪽은 주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국내 지원 현황과 지원 근거고요.

19쪽은 제정안과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근거를 대비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에는 해외 입법 현황이고요.

그리고 25쪽부터는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5쪽은 목적과 기본원칙,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가치의 정의 등입니다.

목적은 말씀드린 바와 같고 기본원칙을 말씀드리면, 사적 이익 창출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 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꾀하고 이익을 구성원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 실현에 우선 사용하고 지역공동체 개발 및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위해 상부상조와 협력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가치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28쪽과 29쪽 보시면요 기본원칙에 대해서 정부 부처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농협법의 경우 잉여금을 손실보전이나 배당 등에 사용하고 있어서 법률 간 충돌 소지가 있다는 점이고, 해양수산부는 수산업협동조합법도 조합원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과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는 기본원칙과 달리 사회적가치의 정의에 ‘문화적 권리의 보장과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다음, 31쪽에 보시면 사회적가치 정의, 각 제정안을 비교했는데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개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36쪽,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핵심 내용이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를 열거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명선 의원님 안의 경우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정의,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정의를 두고 또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의를 두어서 사회적경제조직이라 하면 앞에 말씀드린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연대조직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보시면요, 제정안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를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회적경제기업에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있고 또 어떤 조직은 빠져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어업회사법인의 경우는 기업적 경영체로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여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고요.

농협경제·금융 지주회사와 수협중앙회 출자회사 그리고 은행 부문도 지금 현재 제정안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의 기본 원리로 운영되는데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은 지금 현재는 없는데 사회적경제기업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다음 45쪽,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제정안들은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각 개별법이 있는데 입법 목적과 기본 원칙이 다르므로 개별법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제정안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대해서만 타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도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준 바 있습니다.

다음 47쪽,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제정안에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두고 있는데요. 황명선 의원님 안은 상향식 수립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두거나 아니면 지역이 지역별 기본계획을 두면 그것을 다 수렴하여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용혜인 의원님 안은 반대로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문별 발전계획과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으로는 개별법에서 이미 기본계획 수립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5쪽에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시행계획,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을 정리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부문별 발전계획안의 경우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다 수립하도록 할 것인지 관련된 부처만 수립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56쪽에 보시면, 인천광역시에서 지역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역별 계획의 경우는 조례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다음 61쪽, 다른 계획과의 관계입니다.

제정안들은 당해 기본계획이 다른 계획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을 의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규정은 황명선 의원님 안의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상향식으로 수립하는 체계인데 기본계획이 다른 계획보다 우선 적용한다면 조금 혼선이 있지 않을까 우려돼서 그 부분의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위원회의 경우는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두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기본계획 등 19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조직으로 사무처를 두고 실무위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밖의 사항으로 공무원 등 파견 요청이나 통계조사 규정도 있습니다.

64쪽에 보시면, 위원회 관련해서는 기존의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되고 있는 기존 위원회와의 연계 가능성 또는 기능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지역위원회의 경우 지금 의무사항으로 하느냐 재량사항으로 규정하느냐, 두 제정안이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 형량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6쪽, 사회적경제연대조직입니다.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설립·운영 및 정책협의권 그리고 운영비·사업비 지원 근거 등을 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대조직의 법정화 취지는 공식적인 정책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연대조직에 혹시 영향을 미칠 염려는 없는지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한국사회적경제원의 설립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정안은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고 고용부와 행안부 등이 관계부처의 공동 출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기재부가 하면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가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개발 지원 기능과 재정사업 집행 기능 효율성 제고가 기대됩니다만 사회적기업진흥원 해산하는 것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하고요. 보건복지부도 자활기업에 관련해서 특수성을 좀 인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84쪽,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제정안은 권역별 지원센터와 지역별 지원센터를 두고 있는데요. 권역별 지원센터는 중앙정부가 각 지역에 두는 것이고 지역별 지원센터는 시·도지사가 두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별로 중간지원조직이 종류별로 상이하고 또 정부가 선정한 기관과 지자체 선정 기관이 각각 양립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둔다면 양자가 계속 병립될 수 있는데 일원화할 수 있도록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지원센터 해제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90쪽은 사회적금융 제도 정비 관련입니다.

사회적금융 제도 정비하고 재원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 의무를 두고, 사회적금융 육성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며 또 사회적금융기관의 지정·육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좀 압축적으로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금융 법제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금융 제도 전반의 수익성·안전성에 부담을 줄 우려는 없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세제 지원의 경우는 세법과 같이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4쪽은 기금 설치입니다.

정부기금과 지역기금, 민간기금을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도 있고 자생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찬반 의견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세 감면 등 우대 조치입니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대해서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취지는 인정합니다만 다른 중소기업 제품, 다른 일반 기업의 경쟁 기회가 사실상 제한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 의견을 준 바 있습니다.

다음 114쪽, 운영 공개 및 경영공시입니다.

지금 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운영을 공개하고 경영 공시를 하도록 하고 위원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상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경영공시 예외 사유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운영 공개에 대해서 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 의견을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9쪽의 벌칙·과태료 부분은, 지금 벌금형에 대해서는 타 법과 맞춰서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121쪽은 부칙으로 시행일은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유사 취지의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게 2014년, 벌써 10년 째 논의가 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경제재정소위, 공청회, 안전조정위, 많은 논의를 거쳤었고.

제가 듣기로는 아마 지난 정부 비서실에서 TF까지 구성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했던 것까지, 그런 사례도 있는데 지금까지 합의에 못 이른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란 무엇이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각 개별 분야에 대한, 고용부·복지부·공정위 등의 반대를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은 좀 더 숙려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황명선 위원님.

○**황명선 위원** 제가 좀 먼저, 발의자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발의자 우선.

○**황명선 위원**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관련돼서 지금 생뚱맞게 22대에 나온 게 아니고 차관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19대 때부터, 10년 전부터 이게 죽 논의됐고요. 19대 때 유승민 원내대표와 67명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었다가 그때 원내대표님이 사퇴하는 바람에 이게 자연돼서 임기 만료돼서 그냥 폐기가 됐지요.

그동안에 공청회나 토론회도 있었습니다마는, 19대·20대·21대도 그렇고. 이 핵심 내용은, 그 중요성과 필요성은 다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22대에 와서 제가 발의를 했는데.

결국은 이 핵심은 사회적경제를 위한 현행 법률이 지금 많이 산재돼 있어서 효과나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라고 정부 측에서 지적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고 현장의 목소리가 부처 간 칸막이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정책 수립이, 시행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시장을 하면서 현장의 사회적경제 영역에 계시는 선생님들 이렇게 늘 보아 왔습니다,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가장 큰 어려움들이 기본적으로 각 부처 별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이 제대로 없어서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우려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법률과 충돌이 되는 부분은 입법 유예기간을 뛰어 법률 개정 작업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19대 때부터 지금까지 죽 여야의 무슨 정치적 대립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만 여러 여건상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원내대표의 사퇴, 임기 만료 폐기 이렇게 됐는데 22대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또 22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소위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요.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이게 지금 10년 넘게 논의되어 온 사안이라는 자체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정부가 반대했던 거지요? 거기에 아마 함축적인 게 들어 있지 않나 싶은데……

○**소위원장 정태호** 아니, 정부가 반대하지 않았어요.

○**박대출 위원** 정부가 반대한 것으로 아는데. 기재부, 공정위 다 반대했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기재부에 사회적경제과도 있었고 청와대에 사회적경제비서관도 있었습니다.

○**박대출 위원** 이 법에 대해서는 반대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대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함축적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시장경제 원칙을 저해하는 문제, 과도한 행정부담, 과도한 재정부담 또 국가재정의 정치적인 이용 우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감안해 가지고 아직 시기상조인 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는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또 다른 분요.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기재부차관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사회적경제조직들 혹은 비경제 조직들이 GDP에서 담당하는 비율이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환 위원 미국 GDP가 한 22조 달러 하잖아요. 한 5% 정도를 이 영역이 담당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GDP의 한 10%까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탄생했을까요?

시장이 만능이 아니에요. 시장은 실패도 하고요, 시장은 불균형을 이루기도 하고 또 간혹 위기 시에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든든하게 버텨 주는 조직들이 바로 이런 조직들이에요. 이런 조직들은 위기가 왔다고 해서 해고하지 않거든요.

저희 지역에 암 환자들 사회복귀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예산 같은 것 크게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회적경제조직이 무너진다고 하면 이분들 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경제활동들은 어떻게 책임을 지며 또 이분들의 고통들, 지금은 본인들이 다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다 복지비용으로 들어옵니다. 재정부담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위캔쿠키라고 장애인들을 데리고 꽤 맛있는 쿠키를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요…… 제가 예결위 하고 있지만 지금 밖에 발달장애인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와서 복지예산 늘려 달라고 오체투지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다 기재부 부담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위기에도 강하고 또 여타저타 하는 사회적 버팀목들이 되고.

저는 정부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재부가 시장만능주의에 빠지지 말고, 기재부의 우월주의에 빠지지 말고 시장을 보완하고 시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이런 경제 조직들 혹은 비경제 조직들이 각자의 삶을 제대로 꾸려 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그 바탕이 되는 게 사실은 이 사회적경제법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연차별로 계획들을 세워서 이러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어떻게 커 가는지 그리고 지원해 줄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기재부가 계속 입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영역 그리고 키워야 될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정법안에 찬성 의견을 드립니다.

○황명선 위원 저 한마디만, 잠깐만……

○소위원장 정태호 예.

○**황명선 위원** 아까 박대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2020년에 기재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이에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해 가지고. 그 당시 기재부에 장기전략국 사회적경제과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황명선 위원**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가 반대하고 다른 부처가 반대하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었고, 이것을 다시 정정해서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결국 국가나 정부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건강한 국가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와 정부의 역할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시장자유주의와 다른 어떤 주의 이런 형태로 이분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장경제에서 하고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사회적경제연대의 이런 기본법을 만들어서 사람의 가치를 갖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경제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이념적 대립 이런 내용으로 보지 마시고……

과거에 유승민 의원님이나 새누리당 의원 한 70여 분, 그런 분들도 많은 심도 있는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기업의 경쟁질서 속에서의 이윤 추구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 사회적·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이런 분들에 대한 사람 중심의 가치를 갖고 해야 될 한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과거에 논의했고 토론했고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함께 위원님들이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이윤 추구 모형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요새 ESG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선진국에서도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게 인정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도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 협동조합이 2만 5000개, 사회적기업 3000개인가해서 한 3만 개 정도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 가치들은 어떻게 보면 일개 법으로 할 게 아니고 헌법적 가치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현재는 각 시도 조례로 풀고 있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저희는 개별법으로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본법 체계로 가져갈 경우에 개별법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런 것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목적이나 원칙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사회적인 공감대나 의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포괄 범위도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말한 것처럼 여러 부처 간에 아직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사회적경제가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사회적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 자율성을 보호하는 게 주안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법안은 종합계획 수립부터 해서 죽 시도별 조직, 체계 해서 지원 쪽에 좀 강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저도 예전에 여기 업무에 좀 관여를 했었는데, 정부 부처가 논의도 안 되어 있는데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모든 쟁점을 다 해소해 버리자, 일단 사회적경제기본법이라는 법명만 남기고 나머지 다른 이견 있는 것들은 다 빼 버리자 하는 그런 안도 있었어요, 그것도 민주당 안에서. 그래서 저도 실무작업 하면서 사회적경제조직 이런 것 다 빼고 경제원도 다 빼 버리고 그냥 노동부 내에 센터 하나 두는 것으로 해서 중재안도 만들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여야 협의를 한 기억도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다시 백 해 가지고 처음의 광범위한 안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그렇고 여야 간에 조금 더 논의를 해서 합의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좁혀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이게 20대, 21대에도 계속 논의됐었는데요. 실제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비대화 그리고 경제원 그런 부분들에 관한 우려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 들어내고 실제 기본 가치와 내용이 들어가는 정도로 해서 여야가 논의를 많이 했었지요.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그런 정도로 서로 수정안도 내고 계속 논의를 하다가 합의가 안 된 사안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사회적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경제주체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8년 IMF 이후 그다음에 2008년 위기 그리고 코로나 위기 이후로 실제로 시장 중심의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또 그 속에서 오는 실업, 우리 사회의 불안 이런 문제를 보완해 나가면서 고용과 생산 그다음에 경제의 한 영역을 버팀목을 해 줘서 진행하는 것이 큰 방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해 왔던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협·수협·축협은 금융 쪽으로 가면서 실제 본래적 의미의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들을 많이 상실한 거고 실제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여타 형태들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념적이나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부양이 되고 사라지고 그런 취지로 보지 말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시장경제로부터 아니면 시장경쟁으로부터 일정 부분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새로운 형태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현실 가능한 방향에 대해서 이전 시기에 논의했던 부분을 좀 찾아보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스페인의 카탈루냐주의 FC바르셀로나도 사실은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축구 구단이고 또 카탈루냐주의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그 주가 운영이 되더라도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경쟁력과 내용을 가지고 생존하고 확대·재생산해 나가면서 거기서 인간으로서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한 영역이라서 저는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논의는 그동안 20대, 21대에 해 왔기 때문에 이것도 간략하게 약식으로라도 전체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공감대를 갖고 소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방식으로 같이 해 봤으면 좋겠어요.

○차규근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소위원장 정태호 예.

○차규근 위원 저는 국회 들어와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하는 토론회도 한번 가서 이게 뭔지 공부를 해 봤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이 법안이 우리 사회의 큰 고민 중의 하나인 지역소멸 그리고 공동체 붕괴에 대한 아주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그 내용을 들으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법으로서 여러 가지 개별법과 충돌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19대, 20대, 종전에 이렇게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는 것은 개별법으로 커버하는 데 한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기본법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가 꾸준하게 지속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소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본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찬성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요.

이것도 제정법이 같이 있어 가지고 어차피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 볼 기회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고용 면에서 보니까 유럽 같은 데 보면 보통 사회적경제 조직이 한 7% 정도에서, 7~10%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3%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사회적경제 조직이 미치는 영향력이 꽤 있는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관악구에 보니까 뭐랄까, 일종의 공동체 또는 공공의 선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을 만들거나 아니면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일자리 창출하면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지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연대를 위해서 열심히들 하는데, 보니까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지쳐서 나가떨어지고 그런 분들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와서는, 예를 들면 지방 가면 태양광 같은 경우 하려 그러면 또는 풍력 같은 것 하려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들이 생기니까 주민참여형 발전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 한 영역으로서 인정을 해 주고 정부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 저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까 김영진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바르셀로나나 썬키스트나 이런 게 다 사회적경제 조직인데 우리가 그런 조직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가 한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남기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 여부를 간사님하고 협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동의하고요, 위원장님.

이 중요한 쟁점이 결국 정치 편향성 우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리고 정부 지원 의존적인 조직을 양산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 그리고 기존 제도 간의 충돌 문제 이 세 가지를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다 개방적으로 저희들이 토론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기본법안하고 사회적연대경제기본법안은 계속 심의, 계류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여부는 간사 간에 협의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의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32항까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압축적으로 한 번에 죽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소위 자료 3권입니다.

○박대출 위원 좀 압축적으로 해 줄래요, 이것?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이 논의 21대에서도 아주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 아실 거예요.

○김영환 위원 22대 처음인데.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아시게 압축적으로.

○김영진 위원 계속 논의니까 짧게 합시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래도 설명은 들어야 되니까 압축적으로, 다 아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압축적으로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예, 알겠습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목적 규정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목적에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유통질서를 추가하는 것인데요. 현재 담배사업법이 그동안 제조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삭제되고 유통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추가돼 왔습니다. 이런 연혁을 볼 때 유통질서 확립을 추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 정의 확대입니다.

현재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말하는데요. 개정안은 다양하게 담배의 재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7쪽 표에서 간단히 정리한 것을 보시다시피 연초의 잎을 연초로 확대하거나 연초 및 합성니코틴 또는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기도 하고요. 연초, 합성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니코틴 이외의 물질로 확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준혁 의원님 안의 경우는 담배의 범위를 연초를 재료로 한 것을 하면서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는 내용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년 의원님 안과 조은희 의원님 안의 경우는 담배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하고, 조은희 의원님 안의 경우는 합성니코틴은 추가하면서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상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 없는 니코틴은 제외하는 것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8쪽을 보시면 21대 국회 심사 요지를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21대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시고 또 합성니코틴 관련해서 유해성 여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를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 및 니코틴으로 제조된 것으로 담배 정의를 확대하는 것은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는 유사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시킴으로써 니코틴 중독과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초의 줄기, 뿌리 등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금 세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법상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면 과세 형평성 제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담배의 정의를 확대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니코틴 이외의 물질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기재부나 지자체가 관리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지 않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자담배를 별도로 정의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담배사업법이 전자담배를 별도로 관리·규제하지 않고 있고 이미 담배 정의에 전자담배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그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별 개정안에 대해서, 김태년 의원안과 조은희 의원안의 경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을 담배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으로 소비되는 제품이 담배 정의에 포함될 우려는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조은희 의원님 안의 경우 화학물질평가법상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없다고 인정된 니코틴은 제외하고 있는데 니코틴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부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쪽은 정부 의견인데요. 보건복지부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시판 중인 대다수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 규제에서 배제되고 있으므로 담배 정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다만 니코틴의 경우 가지과 식물에서도 추출이 가능하므로 연초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으로 담배 정의를 제한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니코틴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없는 새로운 중독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서는 개별 관계 법령에서 규

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요.

담배 정의 규정에서 김태년 의원님 안처럼 대통령령으로 확대해 규정하는 것은 위임 범위가 모호하므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의 참고 1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에 대해서 연구를 요청하셨고 그에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연구한 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가능하면 압축해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예.

34쪽은 몰수 규정 확대입니다.

담배의 정의가 확대된다면 몰수 규정도 당연히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8쪽의 소매인 우선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것인데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법에 올리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43쪽입니다.

소매인 명의 대여자에 대해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타인에게 자신의 담배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유해성분 검사 및 공개 관련인데요.

개정안은 정부의 담배 유해성분 정기적 검사 및 공개 의무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의견을 감안해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는 유해성분 검사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이미 담배유해성 관리법에서 규율 중이기 때문에 기재부 소관의 담배사업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50쪽입니다.

전자담배에 대한 제조업 허가 근거를 신설하는 것인데요.

아까 담배 정의를 신설하면서 전자담배의 정의도 신설하는 것이 김준혁 의원님 안입니다. 김준혁 의원님 안은 그래서 전자담배를 신설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제조업 허가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담배사업법 시행, 현재 현행법에 근거해서 대통령령으로 전자담배에 대한 제조업 허가기준을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신설하는 것은 그 실익이 별로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연초 일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 및 국회 보고입니다.

이 부분도 전자담배 정의를 신설하면서 연초 일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거짓 광고 등을 규제하는 내용인데요. 연초 일 액상형 전자담배가 합성니코틴·무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로 거짓 판매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미 현행법이 전자담배를 포함해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 근거를 신설할 실익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담배 무인 판매 금지입니다.

개정안은 자동판매기를 통한 무인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담배 무인 판매 근절을 통해서 청소년의 담배 접근 감소와 이에 따른 청소년 흡연율 감소 효과를 기대하는 개정안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현재 무인 판매가 노동력 감소나 임금 상승에 대응하는 담배소매인의 비용 절감 방안이므로 무인 판매 금지에 따라 영세 담배 소매업자의 비용 부담 확대가 없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상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가 가능하므로 현행 제도를 활용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담배 판매 방법 규제 위반에 대해서, 지금 담배소매인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을 규정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담배 판매 방법 규제 위반에 대한 통일적 제재 도입 측면에서 별금 부과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66쪽에 동 개정안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현행 제도로도 미성년자 담배 구입을 차단할 수 있는데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소매인이 무인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별칙 규정이 부재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담배에 대한 마약류 문구 사용 제한입니다.

개정안은 담배에 대한 마약류 문구 사용을 제한하고 그 별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마 등 마약류 문구 활용 금지를 통해 담배 광고가 마약류에 대한 거부감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고 또 흡연이 대마 사용 등 불법적 행위의 시작점이 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형벌의 형평성 측면에서 별칙 수준을 조정할 필요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마약류 문구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대로 개정한다면 공포일과 시행일 간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추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75쪽의 시행일 등 부칙입니다.

이 부분은 담배 정의가 확대된다면 공포일과 시행일 간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적용례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측 의견이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범석** 세세적인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신중하자는 입장 냈지만 대체적으로는 말씀하신 연초에다가 니코틴을 추가하는 부분, 복지부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제시했고 연구용역 결과 그거를 제외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은 인정해서 저희는 큰 틀에서는 담배사업법 개정에는 동의합니다.

○**박성훈 위원** 핵심은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과거 1988년도에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로 담배의 정의가 변하지 않다 보니까 합성니코틴과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광고나 온라인 판매도 허용이 되고 또 다양한 형태의 경고 문구를 통한 억제 장치도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해를 미치는 것은 결국 청소년이지요. 궐련형 담배는 해를 거듭할수록 흡연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심지어는 담배 자동판매기를 통해서도 구입이 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성인과 청소년 모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두 번째, 그동안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은 합성니코틴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결과가 확실치 않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가 실시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역시 순수니코틴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이 유해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유해물질 총량으로 보면 합성니코틴이 오히려 2배 가까이 많았고 발암물질 역시 천연니코틴에서 만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기재부 차원에서 보면 적정 과세 측면에서도 합성니코틴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작년 한 해 부과할 수 있었던 제세부담금, 그러니까 합성니코틴 원액 수입 후 희석·소분해서 판매하는 판매 부분에 대한 세금 약 7200억 원 또 희석 용액이 든 전자담배 완제품 수입금 약 214억 원, 한 7400억 정도가 지금 누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과정에서 관련되는 규제가 그리고 제도적 장치가 보완이 되지 못하다 보니 업계에서는 본격적으로 규제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법안 개정 전에 합성니코틴을 사재기하는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규제와 과세 공백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이 법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

○**박대출 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관심도 많고 하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지난 21대 국회 때 조금 논의했던 거를 참고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 논의를 추가로 좀 더 검토해 보자 하고 처리를 안 한 것 중의 하나는 기존의 담배법에서는 연초만 해당되는데 만일에 액상담배, 전자담배를 담배법에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오히려 연초담배의 줄기와 뿌리는 빠지고 액상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범위에 다 포함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여부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자담배, 액상담배들의 유해성이 어떻게 확인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검토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올해 복지부에서 유해 여부 검사 결과가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복지부 과장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포름산, 아세트산은 연초니코틴 대비 2.8배, 발암물질, 환경호르몬 성분인 DEHP는 2.4배 나와 있는데 궐련이나 전자담배나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유해하냐 안 하냐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다 포함시킨다면 유해하다는 전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니코틴, 타르 같은 거는 유해물질인데 궐련이든 전자담배에도 다 포함돼 있고 포름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같은 부분도 연초나 전자담배 다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유해 문제는 다 유해한 걸로 국민들께 알리고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문제는 이제는 담배의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제도권 내에 들여오느냐 안 들여오느냐, 저는 제도권 내에 들여와서 제도권 내에서 규제할 부분이 있고 관리할 부분이 있으면 관리하고 그래서 또 그에 따라 수입에 대한 적정한 과세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만일에 이게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해소를 하는 차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담배 같은 거는 거리 적용, 출점 거리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지자체별로 50m에서 100m 사이에는 출점 거리가 제한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합성니코틴 판매하는 소상공인이, 4000개의 점포가 추산되는 걸로 나와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권 내 합법적인 범주에 들어오면 이분들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그래서 만일에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은 제한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런 보완책을 두면서 이것을 전향적인 법안으로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아주 자세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또 다른 견해가 계실 수도 있으니까.

어떠신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혹시 필요하시면 복지부 과장이 연구용역 결과를……

○소위원장 정태호 예, 용역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나오셨지요? 본인 소개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 정혜은 존경하는 위원님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정혜은입니다.

연구 결과는 11페이지부터 적시되어 있습니다.

연구 취지는, 그간에 사실상 제품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품 자체에 대해서 좀 구성을 설명드리면 제품이 100이라고 볼 때 98%가량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녹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제라고 불리는 글리세린 또는 글리세롤, 글라이콜 같은 유기용제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1% 정도는 첨가제라고 불리는 가향물질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가 니코틴 원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니코틴 원액을 합성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천연을 이용하느냐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1%에 해당하는 합성과 천연

니코틴의 유해성이 과연 다른 것인가를 이번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연구 결과 1% 안에 들어 있는 것 중에서 순도는 한 98%가량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2%는 여러 가지 부산물이나 반응 생성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코틴은 위원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중독성이 높고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들을 유발하는 것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요. 그게 1%의 99%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1%, 그 나머지 1~2%를 차지하는 유해…… 이게 순도가 높아서 합성니코틴은 전혀 유해하지 않은 것이냐라는 것을 밝혔을 때 똑같이, 천연니코틴이나 합성니코틴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유해하다라는 것이 이번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과장님, 천연 액상담배라고 하잖아요. 천연이라고, 내추럴이라고 붙여서 파는데 그것도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해하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 정혜은** 예,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 모두……

제가 문자 구조를 좀 가져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생긴 문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박수영 위원** 둘 다 해롭다?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 정혜은** 예.

○**박대출 위원** 니코틴은 니코틴이다. 이거예요?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 정혜은** 니코틴이라서 해로운 것이고…… 합성니코틴이면 유해하지 않다, 무해하다, 그 1%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험 결과 천연니코틴 대비해서 유해 정도가 결코 낮지 않다라는 게 이번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과장님, 어떤 협회에서 복지부 위해성 연구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자기들이 동일한 연구소에 몇 달 전에 했을 때는, 자기들이 제출한 합성니코틴으로 했을 때는 유해성이 검출이 안 됐는데 복지부에서 이번에 한 합성니코틴이라는 거는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 합성니코틴, 그러니까 천연니코틴을 복지부가 조사한 거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진짜 순수한 합성니코틴으로 했으면 유해성이 안 나왔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 정혜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성명서를 발표한 게 있어서 저희도 그 성명서를 보고 진위 여부를 판단해 보았는데요. 이쪽 전자액상안전협회의 연구 과제에 대해서, 이거를 수행한 적이 있느냐라는 거를 연구진한테 물어봤습니다. 한 번도 없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없었대요?

거짓말이네.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 정혜은**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셨던 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연구기관은 사실 17년도에 설립이 됐고 담배 성분 분석과 관련돼서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요.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이 확보되어 있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제를 이미 많이 수행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절차적으로 볼 때도 국가계약법상의 전문적인 학술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한 것이거든요.

○**이종욱 위원** 그 주장은, 그러니까 합성니코틴이 시중에 합성니코틴이라고 칭하는 거를 조사한 거지 진짜 합성니코틴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 정혜은** 그런데 연구에 사용한 시료를 어디서 취득했느냐를 물으시는 건데……

○**이종욱 위원** 유통되는 것.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 정혜은** 대표성 있는 시판 제품을 구입했고요. 거기다 플러스 식약처로부터도 한 3개 정도의 시료를 제공받아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게 충분히 대표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종욱 위원** 이게 대표성 문제는 아니잖아요. 시판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 정혜은** 그러니까 시판되지 않으면 사실 이거를 어떻게 취득해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종욱 위원** 그런데 BAT에서 이번에 하나 나왔지요, 합성니코틴이라고 하는 것. 그렇지요? 색깔도 똑같이 생겼는데 합성니코틴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진짜 합성니코틴이에요?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 정혜은** 합성니코틴이라는 것 자체가 반응하는 루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합성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합성하는 그 과정들이 특허로 과정…… 그러니까 니코틴이라는 최종 프로덕트가 나오기 위해서 어떤 시작 물질과 어떤 반응 물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힌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허를 받은 것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대표성 있는 것 그 프로토콜을 따랐을 것이고요, 시판되고 있는 것들이. 대규모로 시판되고 있다는 건 그 특허를 받은 방법대로 합성을 하여서 그 프로덕트를 팔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A와 B가 만나서 C가 되려면 이것은 어느 정도 확립된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종욱 위원** 글쎄요, 전문적인 내용이라 그런데 자기들 주장에 의하면 합성니코틴은 사람이 만들어 내는 거고 사람들이 인지하는 발암물질은 합성 과정에서 다 제거한다, 제거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합성니코틴은 발암물질이 없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 정혜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연구용역의 결과인 거지요.

○**이종욱 위원** 그런데 이 조사한 샘플의 시료가 그쪽에서 주장하는 합성니코틴인지 아니면 그냥 시중에서 칭해서 팔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지요.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 정혜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에 대한 연구는 22년, 23년 계속해서 선행연구를 통해서 제품을 수거한 연구들은 수도 없이 많이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이종욱 위원 했고, 이번에는요?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 정혜은 이번에 한 것은 이 제품에 대한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 안의 글리세린, 글라이콜 이런 것들 다 빼고…… 그러니까 이 2%에 해당하는, 1%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한, 그러면 원액을 뭔가 사용했을 텐데 그 원액을 무엇을 사용했을까 하더라도 합성을 사용한 것인지 천연을 사용한 것인지 가리지 않고 똑같이 유해하다라는 결론이 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제품 분석이 22년, 23년도에 식약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대로 이미 수거한 담배 제품 안에는 유해성분이 수도 없이 많이 들어 있는데, 다만 이 1% 합성니코틴 원액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이 연구용역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대출 위원 저 질문 하나만 좀 할게요.

○소위원장 정태호 박성훈 위원님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박성훈 위원 제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가향을, 향을 가미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입니다. 청년들 조사를 해 보니까 특히 여성들, 여학생들이 가장 먼저 담배를 접하게 되는 도구가 액상형 가향 전자담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견상으로 볼 때는 이게 담배라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팬시하게 생겼어요. 거기에 맛도 과일 맛이라든지 박하 맛 이런 다양한 형태를 넣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너무나 손쉽게 담배에 접근을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해외 사례를 찾아보니까 해외에서는 가향 담배를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WHO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월련에 가향 성분 추가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는 모든 담배 제품에 가향 성분 첨가를 금지하는 등 각국이 담배인지 아닌지를 어렵게 만드는, 특히나 무분별하게 담배에 접근하기 쉬운 청소년들에 대한 판매도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말로 우리 국민의 건강, 특히 청소년들의 건강을 확보, 안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이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데요. 전자담배하고 액상담배가 같은 것인지 구분인지 그것 모르겠고요.

두 번째, 니코틴의 종류가 합성니코틴, 천연니코틴 그리고 연초니코틴이 따로 있는 건지 이것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니코틴이 유해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천연니코틴이든 합성니코틴이든 니코틴이라는 자체는 유해물질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 정혜은 예.

○박대출 위원 액상이든 뭐든 그게 구분이 아니잖아요. 그게 맞지요?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 정혜은 예, 맞습니다.

○박대출 위원 1급 발암물질은 포름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유해물질에는 니코틴, 타르 이렇게 분류를 해 놨단 말이지요. 그러면 액상이든

천연이든 뭐든 어떤 종류의 니코틴이든 유해물질이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 정혜은 예, 맞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 앞의 질의도 답변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 정혜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까 그 말씀이고요. 니코틴이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다 동일한 기전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전자담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틱 형태로 돼 있는 궤련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흔히 접하는 담배 궤련이 있고 궤련을 디바이스에다가 끼워서 피우는 궤련형 전자담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태우는 방식이 아니고 찌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 그것 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액상형 전자담배입니다.

○박대출 위원 궤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오케이.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 정혜은 궤련형 전자담배는 저희가 흔히 보는 그 궤련을 디바이스에다가 끼워서 그것을 피우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찌서 피우는 방식으로 피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액상형 전자담배 속에 들어 있는 게 합성니코틴일 수도 있고 천연니코틴일 수도 있지만 그건 그냥 액체 형태로 돼서 그것이 일회용도 있고 디바이스에다가 끼워 피우는 형태도 있고, 그러니까 고체의 기다란 형태가 아니라 액상의 형태다, 그게 액상형 전자담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 가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 정혜은 그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100이라는 담배 제품이 있으면 98%가량은 이 모든 것을 녹이기 위한 용제에 해당하는 글라이콜, 글리세롤 이런 물질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는 원액, 1%는 첨가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향 물질은 첨가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박하 향이 됐든 초콜릿 향이 됐든 과일 향이 됐든 이렇게 해서 거부감 없이, 허들 없이 담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향 물질들을 넣어서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첨가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충분히 말씀 들으셨어요?

이게 핵심은 결국 담배의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인 문제지요. 그것에 따라서 뭐랄까요, 단속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고 규제를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 박대출 위원님이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이게 담배의 정의로 들어갔을 때 기준의 전자담배 파는 분들이 한 4000여 개 되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하에서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논란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보니까 실제로 담배 정의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합성니코틴 하는 쪽 사람들은 합성니코틴도 가짜 합성니코틴이 있고 피해가 없는 합성니코틴이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비 합성니코틴 제조업자들을 단속만 하면 되는데 왜 우리까지 피해를 입히느냐 이런 주장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지금 이게 국민들의 큰 관심 사항으로 돼 있고 그러면서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국회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해서 가기보다는 뭔가 다양한 얘기

들을 공개적으로 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 줘야 승복들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야말로 위원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공개 공청회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내려 주는 식으로 해야 모두가 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박수영 간사님께도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공청회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역시 계속 심의로 해 놓고 계류 상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위원장님, 저는 우리가 늘 익숙하게 해 왔던 공청회가 아니라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소위원장 정태호 청문회도 좋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서 사업자들도 부르고 실제로 이것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불러서 얘기도 들어 보고……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겠습니다. 그것 좋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든 청문회든 한번 제가 그것은…… 청문회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토론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담배 피우는 분들은 말씀들이 좀 많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웃음소리)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류해서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소위 자료 3권의 77쪽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딱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을 도입하는 것과 원화표시 외평채 전자등록 규정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7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입니다.

지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도표로 표시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현행 전문금융기관 등 간의 중개업은 일반외국환중개업으로 정의하고 또 전문금융기관 등과 그 밖의 자 간의 중개업은 대고객외국환중개업으로 새로이 규정하여 외국환중개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은 보증금 예탁뿐 아니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받지 않도록 하되 일부 조문의 경우는 준용하도록 하여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80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요,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필요성입니다.

먼저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정안대로 한다면 대고객외국환중개회사가 신설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객의 가격 선택권 확대와 거래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

하고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대고객 시장은 은행 간 시장과 달리 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고객외국환중개회사가 생긴다면 회사가 각 은행별 시스템들로부터 호가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이를 전달하면 고객은 플랫폼을 통해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는 은행과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81쪽에 보시면,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대고객외국환중개업 거래 상대방을 지금 현재 개정안은 ‘그 밖의 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핵심이 거래 상대방이기 때문에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전문금융기관등에 속하지 아니한 외국환거래 상대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82쪽과 83쪽의 조문대비표에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요.

한 가지 사항 더 있는데 계속 보고를 드릴까요?

○소위원장 정태호 예.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86쪽입니다.

다음은 원화표시 외평채 관련해서 전자등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금 원화표시 외평채 전자등록 규정을 외국환거래법에 신설하는데 개정안은 현재 약 20년 만에 발행되는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닌 한국은행에서 수행하는 특례를 외국환거래법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외국환거래법에는 없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전자증권법에는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72조가 있는데, 한국은행에 대해서 특례를 두는데 원화표시 외평채는 이 특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화표시 외평채를 새로 발행하면서 전자증권법 개정을 하지 않고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하여 한국은행에 관한 특례를 두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87쪽에 원화표시 외평채의 경과 및 등록 체계가 있는데요. 다 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요.

88쪽에 보시면 검토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우선 살펴봤는데요. 법체계의 정합성 및 통일성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사실 전자증권법 개정 사항이라고 봤습니다. 현행 전자증권법이 전자등록 제도를 예탁결제원에서 관리하도록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표시 외평채 관련 부분도 전자증권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개정안의 내용도 현재 전자증권법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검토의견과 동지의 입장에서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년 10월 21일에 발의되어서 현재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그 개정안의 처리 경과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89쪽에 보시면 정부 의견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다만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만약 연내에 국회 통하여 개정되는 경우 전체 법체계를 고려하여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수정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별도 의견이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는 한시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전문위원 설명 잘해 주신 것처럼 80페이지 보시면 일종의 외국환증개 소매사업자를 저희가 신규로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관련 산업이랄지 조금이라도 낮은 시장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제기하신 의견은 정부도 같은 취지로 공감하고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원화 외평채 관련해 가지고는 전자증권법, 외국환거래법상 한국은행 발행의 특례를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전자증권법에 담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는 외평채 근거 법률이 외국환거래법이기 때문에 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왕이면 담당 상임위인 기재위에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최종적으로 두 법이 다 통과됐을 경우에는 법사위 단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박대출 위원** 약간 요약 설명이 필요한데,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외국환거래법은 외평채 전자등록과 대고객 중개업 신설 두 개고 전자증권법은 외평채 전자등록 부분 이것 하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자증권법은 지금 정무위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니까……

지금 두 개짜리와 한 개짜리 법이 있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한 개짜리 법만 되고 두 개짜리 법이 안 되면 그것은 좀 애매하게 반쪽만 되니까 우리 법안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것 처리하는 방식은 선후를 어떻게 하느냐의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 논의를 지금 정리해야 되는 거고요.

이 법안의 주요 요지는 그거지요. 경쟁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유리한 외국환 거래를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니까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정무위의 상황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전자증권법 개정 상황이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지금 소위 안건으로는 올라가지 않았고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수영 위원** 바로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면 정부 측에서 양쪽에 다 낸 겁니까? 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박대출 의원님께서……

○**박수영 위원** 박대출 의원님은 여기 내셨고 정무위에는 누가 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박대출 의원님이 같아……

○**박수영 위원** 거기도 박대출 의원님이 내셨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박대출 위원** 정무위에서 필요한 법안이라 그래 가지고……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쪽에 하나 장치를 둔 겁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검토의견을 정리해 보면 대고객 업무 이것을 신설하는 것은 이 법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원화 외평채 전자 하는 것은 전자금융법인가요, 거기에 규정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거잖아요.

○**박수영 위원** 차관은 또 다른 얘기를……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수석전문위원은 아마 그런 취지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외평채의 기본법이, 그 근거법이 외국환거래법이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담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이왕이면 기재위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그 두 가지 법을 다 올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대출 위원** 쉽게 말해서 반쪽 심사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장치를 하나 더 뒀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데 정부 중에서 기획재정부는 그런 의견입니다만 89페이지의 정부 의견을 보면 법무부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전자증권법이 통과되면 전체 법체계를 고려해서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평채법에서 빼 가지고 전자증권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을 법체계상 인정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타당하다기보다는 그 둘 중……

○**진성준 위원**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법사위가 법 체계·자구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이왕이면 외국환거래법에다 담는 게 낫지만 지금 진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에서 그렇게 수정이 돼도 실제 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진성준 위원** 글쎄, 그런데 정무위원회 심사 속도가 어떤지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도 이 법을 정리하되 정무위에서 전자증권법이 통과되면 법사위가 체계를 조정해 달라 이런 부대의견을 달아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정태호** 차규근 위원님.

○**차규근 위원** 저도 별다른 이견은 없고요.

다만 대고객외국환중개업 관련해서 정부는 일단 기업부터 시작해서 일반 개인들까지 확대할 계획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자세한 내용은 국제금융국장이 설명드릴 텐데 우선은 기업 위주로 시작을 하고 여건을 봐서 개인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금융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재환** 국제금융국장 김재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다 정할 사항인데요 지금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일단 중소기업 등 해서 기업 위주로 진행을 하고 개인까지는 시행 초기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이 제도 정착을 봐서 개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나요? 대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과 관련해서는 수정안의결이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전자증권법 관련 부분은 부대의견을 달아서 법사위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대의견 다는 것으로.

그러면 부대의견을 만들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부대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안은 아니고요 저희가 심사경과에 그렇게 담아서 법사위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절차상 문제니까요.

○진성준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예, 그렇게……

그러면 이 법안은 의결해도 된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원안 의결이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수정……

○소위원장 정태호 이것도 수정?

○진성준 위원 수정 의결입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받기로 했으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요. 3권 1회독을 다 끝마쳤는데 아까 우리가 대안을 새로 정리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면 10분 정회 할게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정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다음 항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유인물은 오전에 심사하셨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오전에 자구 정리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 정리한 것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모두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SOC, R&D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산안 첨부서류의 자구를 정리한 것으로 해당 연도만 삭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좀 달리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소위 자료 1권의 44쪽에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38조 6항을 신설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는 38조 6항을 신설하지 않고 현행 6항을 개정하여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SOC,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금액 상향 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

○**박수영 위원** 이건 아까 얘기할 때 그게 아니었는데, 그때 지능정보화라든지 다른 것도 포함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왜 SOC하고 R&D만 포함한 박덕흠 의원안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아까 말씀드렸을 때 R&D하고 SOC만 1000억으로 높이고 나머지는 현행 유지하는 걸로 말씀드렸었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랬나요? 아니, 다른 것도 다 하자고 한 것 아닌가?

○**진성준 위원** 글쎄요, 위원들의 인식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소위원장 정태호**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진성준 위원** 저도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 국가 재정지출 500억으로 해서 다 통일하는 것으로 하고, R&D 문제만 조건이 좀 있다고 하니까 그걸 정리하면 그 후에 검토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 아니었어요?

○**소위원장 정태호** 예, 그 취지였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러시면 저희가 그 안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지난번에 언론 비판이 있다 보니까, SOC나 이런 건 500억에서 1000억 사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큰 부담도 없고 그러니까 2개는 늘리더라도 언론 비판이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재정준칙하고 연계해서 하면 그런 비판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이것 2개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범위는 다른 사업이에요. 그런데 ICT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이런 것도 사실 규모가 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새 AI 이런 것들 진행되면서. 그래서 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아까 점심시간에 우리 나갈 때 문화일보, 지금 조선일보 이렇게 난 비판적 기사들을 보면 이것만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정부가 모여서 돈 더 쓰게 기준을 올렸다,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기사가 났는데 이대로 나갔다가는 우리가, 그대로 또 우리 위원회 전체가 얼어맞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건 또 연말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을 좀 두고 타이밍을 봐야 될 것 같고, 그것하고 관련해서 예를 들면 야당 의원님 중에 반대하시는 분도 많지만 재정준칙 중에서, 여러 조문이 있지만 그중의 한두 개라도 받을 만한 게 있는가 좀 더 보고 함께 움직여야 우리가 욕을 적게 먹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전원이 다 나가서 욕을 먹을 가능성성이 있어서 저는 이걸 지금 당장 통과시키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견해임을 말씀드립니다.

○**박대출 위원**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저도 언론에서 쓴 칼럼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예 그냥 법을 'MZ 세대 착취법'이라고 그렇게까지 가 있어요. '재정준칙 없는 예타 완화'

이것 잘 보시지요. 국가부채 1000조 원 시대에 정치권이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공동체적 과제를 외면한다, 기득권 동맹의 민낯이다 이렇게 아주 험한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재정준칙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재정을 한쪽에서는 풀기만 풀고 묶는 쪽 부분은 외면해 버리면 이게 국가채무를 계속 늘리는데 그리고 또 국회가 국가재정을 외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 처리하는 것은 재정준칙하고 같이 처리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것 뭐 연계될 사안입니까?

○박대출 위원 연계되어야지요.

○진성준 위원 그 자체로 예타의 벽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박대출 위원 재정을 묶는 것하고 푸는 것하고 따로 떼 가지고 쓰는 것만 쓰고……

○진성준 위원 이건 재정 묶는 것도 아니에요. 재정 묶는 게 아니잖아요, 푸는 것도 아니고.

○박대출 위원 이건 푸는 거예요.

○진성준 위원 이게 뭐 푸는 거야.

○소위원장 정태호 차규근 위원님.

○차규근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상 기준금액 상향 부분 관련해서는 관련 법이 법제처 심사 과정에 있고 또 하나는 복지위에서 통과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 법안의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금액 상향에 대해서는 저는 명시적으로 찬성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아까 기재부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종전 5년간 구간별 신청·선정·통과 현황, 분야별 면제 현황 이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런 자료들도 저희가 한번 입수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논의해도 되는 건 아닌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저는 예타 총사업비하고 국가재정 지원 규모 상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 개정안 취지에.

이게 몇 년 됐지요, 이 500억·300억이 유지된 지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20년 이상 됐습니다.

○김영환 위원 물가상승률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건축비, 자재비 오른 것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되지요?

그래서 저는 총사업비 증액과 그다음에 중앙정부 재정 지원 규모 상향시키는 것은 당연한 물가상승률 기준보다도 못한 금액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이것과 재정준칙, 재정건전성 부분은 또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액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인데 그걸 재정준칙과 연계해야 되는 것은,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비판 글 쓰지만 물가상승률 한번 계산해 보라고 하면 저는 당연한 순리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비타당성조사 할 때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조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접경지역 관련돼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면 경기남부와 북부는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지침을 마련하실 때 접경지역, 특히 저쪽 위쪽에 북한과 맞닿아 있는 강원도 그다음에 또 경기도에서의 동두천이나 연천 그다음에 인천의 강화 이런 데 같은 경우들은, 접경지역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이 같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일종의 부대의견처럼 좀 달고…… 그것은 기재부가 알아서 나중에 지침 마련할 때 마련을 하시겠지만 그것도 좀 감안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도 접경지역을 고려하고 있는데……

○김영환 위원 담당 과장님이 안 하고 있대요, 지침이.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장 강경구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하고 있어요?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장 강경구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명확히 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소위원장 정태호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저는 예타 1000억으로 올리는 것은 사실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입장에서 그런 반대를 무마하는 차원에서 확실한 것 2개만 일부하겠다는 것 이해는 되지만 제도 운영 측면에서 이렇게 어떤 시설은 500억, 어떤 시설은 1000억으로 유지하는 게, 기준을 가져가는 게 안 맞다, 일관성 측면에서 같이 하려면 같이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시기적으로는 여러 위원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굳이 오늘 당장 의사결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재정준칙 연계 여부도 있고 전체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음에 논의하시고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면 그려십시오.

대체로 SOC에 한정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데에는 동의를 하고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문제는, 모든 사업으로 넓히되 재정준칙 문제를 함께 고려할 거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논의해서 이다음 회의에서 결론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아까 논의의 취지는 총사업비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에 관한 논의였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런데 이렇게 가져온 것은 그 논의의 취지에는 안 맞는 문구인 것 같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또 여당 위원님들께서 재정준칙과 연계해서 이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뭐 어떻게 결론을 내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러면 이것은 계류시켜 놓을게요.

○**박수영 위원** 기재부가 3개를 가지고 왔는데……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이때의 계류라는 것은 법안 냈던 것에 대한 계류가 되는 거지요?

○**박수영 위원** 예.

남은 2개도 나중에 할까요?

그것도 지방이 있어 가지고 아까운데……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추가적으로 지금 개정안 중에 여기……

○**소위원장 정태호** 아니, 지금 나머지 예타 면제 사업 내역 구체화하는 부분하고 예타 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고려인데 이것도 결국은 예타 제도 전반과 연결돼 있는 사안이라서 굳이 이것만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박수영 위원** 위원장님 알아서 하시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게 하지요, 뭐.

그렇게 하면 오늘 안건 심의는 다 끝난 거지요?

아까 김주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한 건……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국토부에서 나와 있고 진전 사항이 좀 있다라고 해서 현재 진전 사항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회장 김혜진**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과장 김혜진입니다.

저는 김포골드라인과 5호선 연장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우선 김포골드라인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하는 것은 국토부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국토부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거기를 방문하셨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는데요. 최근에 23년 5월하고 24년 1월에 두 차례 발표했습니다.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 24년 6월부터 차량 6편성을 추가로 넣었고요. 그래서 배차 간격은 기존에 3분이었는데 지금은 2분 30초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증차 예산을 반영해서 26년 말까지 5편성을 추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배차 간격이 2분 10초까지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행주대교 남단부터 김포공항 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김포대로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당산역, 상암 DMC로 운행되는 신규 버스 노선도 증차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진입하다 보면 올림픽대로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올림픽대로 지정체 완화를 위해서 개화IC 확장 공사도 지금 진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호선 관련해서는 사실은 21년 당시에 저희가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고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반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랑 서울시, 인천시 등 지자체 갈등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그다음 해, 22년도에 서울시에서 방화차량기지랑 건설폐기물 업체들의 김포 이전을 조건으로 해서 5호선 연장을 동의했습니다. 그게 22년도 일이고요.

그런 다음에도 23년 당시에 또 세부 노선이나 사업비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인천시랑 김포시랑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 23년부터 사업이 시급한데 지자체 갈등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23년부터 지자체 갈등 조정을 추진했습니다. 지자체 협의체도 하고 민간 전문가 TF, 전문기관 용역도 하고요. 각 지자체랑 개별 협의도 하고 정말 수없이 많은 논의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갈등 조정 여러 번 했고 그래서 24년도에 국토부에서 조정안을 마련해서 그다음에 올해 9월에 예타를 보내서 지금 예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천·김포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5호선 예타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예타가 통과되고 나면 31년 개통을 목표로 그다음 절차인 기본계획 수립한다든가 설계하고 착공하고 이런 단계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출 위원** 그들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2량이 아니고 3량을 운행하는 것을 시범 운영해 가지고 문제점이나 필요성을 하라고 주문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용역을 했어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장 김혜진** 사실은 저희 장관님도 그렇고 3량으로 하면 안 되냐 여러 번 저희가 검토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승강장이 딱 2량에 맞춰서……

○**박대출 위원** 아니, 아무도 검토를 안 했어요. 검토만 한 거지 내가 그걸 시범 운영을 하라 그랬다니까, 시범 운영을 해서 실제로 문제가 있느냐.

제가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김포골드라인의 문제점이 지금 플랫폼이 2량밖에 안 됩니다. 한 량에 출입문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김포골드라인의 플랫폼이 어떻게 돼 있느냐하면 한 량이 문 5개까지 돼 있게 이만큼은 여유가 있습니다. 출입문 4개만 되는 게 아니라 출입문 5개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한 량을 가지고 플랫폼이 이만큼 있다면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 한 쪽 문만 해 가지고 내리고 닫고 할 수 있는 것, 혹시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이걸 반만 하면 25%가 늘어나는 거예요. 문 5개를 이용해 가지고 한쪽을 늘려서 안쪽으로 더 여유 있게 한다면 50%가 늘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 철로는 3량이 운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운영해 보고 시민들이 불편해하는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시범 운영을 해라라고 주문했는데 왜 시범 운영 안 했어요?

골드라인의 문제는 말이지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반응이 딱 오냐 하면 시민들이 안쪽으로 들어가기 싫어한다고 그래요. 내가 뭐라고 그랬냐. 나 같으면 안쪽 들어간다, 안쪽이 훨씬 편하니까. 왜 복잡한데 바깥에 서 있느냐.

김포골드라인은 다른 라인하고 달라요, 지하철이. 처음 시발점 역에서, 출발역에서 종착역인 김포공항까지 내리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 탑니다. 중간에 간이역에서 내리는 사람 한두 사람 정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계속 타는 사람만 있고 김포공항에 오면 다 내려요. 거꾸로 갈 때도 마찬가지가 되지요. 이게 김포골드라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는지, 이게 2량으로 하는 것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2량으로 증편, 하루에 5편 증편해 가지고, 2량짜리 5편 증편해 가지고 몇 명 되겠어요. 3량을 붙

여 했을 때는 50%가 늘어나고 차라리 반량만 이만큼이라도 하더라도 문 하나 더 있잖아요. 어차피 문 2개씩 쓰는 것 반만 써 가지고 수송량이 25%가 늘어나는 건데 왜 이걸 시범 운영을 안 하냐고요.

○**소위원장 정태호** 답변해 보세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교통정책과장 김혜진** 제가 그 부분은 파악해 보고 다시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봅시다.

방화차량기지 있는 곳이 제 지역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잘 아는데 건폐장도 동시에 이전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야 사업비도 나와요.

건폐장 이전 문제는 김포시와 인천시 사이에 어떻게 합의가 되고 있습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교통정책과장 김혜진** 지금 건폐장 이전은 김포시에서 받는 걸로 김포시도 알고 있고요. 서울시랑 김포시랑 협약을 했을 때 방화차량기지랑 건폐장도 같이 김포시로 가져가는 걸로 김포시도 알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아니, 그런데 노선 가지고 김포와 인천이 서로 달랐잖아요. 합의가 안 되니까 대광위에서, 국토교통부가 중재안이라고 딱 내놨잖아요. 이러면서 건폐장 이전 부지와 또 건폐장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서로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문제도 중요한 걸림돌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무슨 골드라인 연장, 5호선 이전 이 얘기만 온통 머리에 넣고, 건폐장 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 해결 못 하는 거예요. 함께 다뤄야 합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교통정책과장 김혜진** 건폐장 이전 부지는 김포시에서 찾고 있고 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서로……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찾고 있는 거잖아요. 인천시는 노선에 불이익이 있는데 김포가 자기 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인천 쪽에다가 건폐장을 갖다 놓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강력하게 반발해요. 그렇잖아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교통정책과장 김혜진** 예.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폐장 이전 문제도 대광위가 똑같은 관심을 갖고 쟁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교통정책과장 김혜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타로 보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예타는 우선 급하니까 먼저 보내 놓고 그다음에 자자체랑 계속 협의하면서 풀어 나가겠다 그런……

○**진성준 위원** 그것도 아울러 쟁겨 주십시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교통정책과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박대출 위원 말씀하신 것도, 1.5 늘리는 문제도 검토하시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교통정책과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 말씀하셨나요?

두 분 말씀하신 것 잘 쟁기세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교통정책과장 김혜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산회를 해야 되겠네요.

오늘 의결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회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범석 기획재정부1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송주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

### ○출석 위원(11인)

김영진 김영환 박대출 박성훈 박수영 이종욱 정일영 정태호 진성준 차규근  
황명선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 재정부

제1차관 김범석

미래전략국장 유수영

국고국장 황순관

재정관리국장 박봉용

국제금융국장 김재환

재정건전성심의관 정창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나성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정혜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장 김혜진